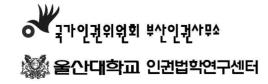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14:00-16:00
-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프로그램

일 시: 2014. 10. 13(월) 14:00~16:00

장 소 : 울산광역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울산광역시청, 울산대학교 인권법학

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시 간	세부 진행 내용
14:00-14:10	■ 개회■ 인사 및 참석자 소개
	진행 : 오문완(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표 : 인권기본조례의 전국적인 추진현황과 과제
14:10-15:00	- 백인애(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50분)	■ 발표 :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 박영철(동구 인권위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 발표 : 지자체 인권업무 추진시례(부산시의 인권기본계획) 및 과제
	- 송시섭(부산시 인권증진위원, 동아대학교 교수)
15:00~15:30	■ 발표 : 지자체 인권업무 추진시례(울산동구 인권도시 등) 및 과제
(30분,각10분)	- 이생환 의원(울산시 동구 인권위원장)
	■ 발표 : 지자체 인권업무 추진시례(울산북구 인권기본계획) 및 과제
	- 강진희 의원(울산시 북구 인권증진위원장)
15:30-16: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30분)	■ 폐 회

목 차

	과 과제 …	전국추진현황괴	본조례의	인권기	Ι.
1	위한 제언	실효성 강화를	본조례의	인권기	Π.
사례3	기본계획)	추진(부산인권기	인권업무	지자체	Ш.
4	·) 사례 ····	추진(울산동구)	인권업무	. 지자체	IV.
5	·) 사례 ·····	추진(울산북구)	인권업무	지자체	v.



전국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백 인 애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과제

Ⅰ. 인권의 지역화에 대한 공감 확산

- 인권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늘어나고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인권행정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권제도를 실험함으로써 인권행정의 지평을 넓히는시도도 이루어지는 등 지자체 인권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뿐만 아니라질적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진행중임.
- 또한 인권의 지역화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는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4차 회기(2013. 9. 20.)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A/HRC/24/L.1)을 채택함.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RCAC)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9월 제27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이렇듯 지역의 인권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자체의 이행 노력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많고 인권조례를 제정한지자체 내에서도 그 이행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1. 인권조례 제정 현황

- 2014. 5. 기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69곳(광역자치단체가 15곳, 기초 자치단체가 54개)으로, 이는 전국 지자체의 28% 정도에 해당함.
-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권조례 제정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7) (d)		조례제정 여부
지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제정수/전체수)
서울	0	9/25 (36%)
부산	0	9/16 (56.3%)
대구	0	1/8 (12.5%)
인천	×	0/10 (0%)
광주	0	5/5 (100%)
대전	0	2/5 (40.0%)
울산	0	5/5 (100%)
경기	0	7/31 (22.6%)
강원	0	2/18 (11.1%)
충북	0	0/12 (0%)
충남	0	3/15 (20.0%)
전북	0	1/14 (7.1%)
전남	0	4/22 (18.2%)
경북	0	2/23 (8.7%)
경남	0	4/18 (22.2%)
제주	×	0/2 (0%)
세종시	0	
총계	15	54(28.4%)

- 위 표에서 볼 때 인권조례 미제정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시와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2013. 12. 인권조례 공포예정이었으나 도지사 재의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별도로 인권조례 제정 작업이 진행중이고, 인천시의 경우 2013. 6.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인권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센터와 연계하여 2015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권위 권고당시의 피권고기관 227개를 기준으로 28% 정도에서 제정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제도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조례제정 움직임 또한 활발하여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모두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된 반면, 조례 미제정인 인천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이 전무함.
- 한편 충청북도(0%), 전라북도(7.1%), 경상북도(8.7%)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 권조례 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조례 제정에 따른 이행상황

- 지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더라도 조례의 실질적 이행 정도 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꾸준히 이행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에도 지자체에 따라 그 이행 정도는 상이한 단계에 있음.
- 인권조례에 따른 정책의 이행 정도를 살펴볼 때, 2014. 5. 기준으로, 최근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추진상황을 인권보장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인권조례에서 공히 포함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지자체	조례 제정일	인권 증진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전담부서	조사 등 기타
1	서울시	'12.9.28	0	0	○ (직원, 투자·출 연·시설 등)	O (1과3팀)	○조사:시정권고 15건 ○행정대집행 인권매 뉴얼 마련 등
2	부산시	'12.2.22	0	0	○ (직원, 강사양 성)	× (담당자지정)	
3	광주시	'09.11.16	0	0	○ (직원, 시설, 시민 등)	O (1과5팀)	○조사:시정권고 3건 ○인권지표, 인권헌장, ○인권도시포럼
4	울산시	'12.10.11	0	추진중 (연내 완료)	○ (직원, 산하기 관)	× (담당자지정)	
5	대전시	'12.11.2	0	추진중	×	× (담당자지정)	
6	충남도	'12.5.10	0	연구용역 진행중 (10월 중 완료)	○ (직원)	× (담당자지정)	
7	전북도	'10.7.9	×	×	○ (직원)	× (담당자지정)	
8	전남도	'12.7.5	X	×	○ (직원)	× (담당자지정)	
9	경남도	'10.3.25	×	×	X	×	
10	강원도	′13.6.7.	0	연구용역 추진(14년)	-	(인권센터)	
11	경기도	' 13.8.5					
12	경북도	'13.11.11			×		
13	충북도	'13.12.27					

- 위 표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광주시 2곳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이행조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임.
 - 경기도, 경북도, 충북도는 비교적 최근에 인권조례가 제정된 측면도 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려 운 단계임.
- 이하에서는 인권조례 이행조치를 비교적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한정 하여 인권증진위 등 분야별로 이행상황을 상세히 살펴봄.

① 인권증진위

- 독립적인 인권전담 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수준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본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현, 인권침해 사안의 결정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임

② 인권증진기본계획

- 위 표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 중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서울시, 부산 시, 광주시이고, 울산시나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후 계획을 수립중이며, 대전시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 기초자치단체로는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서울 성북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임.

③ 인권교육

○ 대부분의 인권조례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와 광주시가 다양한 형태로 인권교육 실시를 강화하는 반면, 여타 광역자치단체 는 직원에 대한 일회성 교육 정도에 머물러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및 동구 등 기관을 제외하면 인권교육의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편임.

④ 인권전담부서

- 전체 지자체로 볼 때 유관조직에 담당자 1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인 권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매우 적지만, 광역 단위로는 서울시와 광주시, 기초 단 위에서는 광주 동구와 북구에서 과 단위로 전담부서가 구성되어 있음.
- 팀 단위의 규모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모두 기초자치단체로서, 서울 성북 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경기도 수원시임.
 - 서울 성북구 및 서대문구, 광주 북구의 경우 조례 제정 이전에 전담부서를 설 치한 경우로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인권행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한편, 강원도나 경기 광명시처럼 행정조직 내 편입돼 있지 않지만 상담 등을 위해 별도로 조직(인권센터)을 구성한 사례도 있음.

⑤ 조사구제

Ⅲ. 검토과제

1. 추진체계

- 가. 인권옴부즈맨
- 나. 인권증진위
- 다. 인권센터 및 전담부서

2.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조직내 소통

- 인권제도의 구축・실행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나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이를 인권제도의 방향을 고민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나 전문가 협력체계는 인권제도 이행의 핵심 추진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유관기관과 연석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의 사례가 모범을 보여준다고 보임.1)
- 한편, 전술한바와 같이 인권정책의 핵심은 행정의 인권화이고 그 핵심이 지자체 정책 전반의 인권적 검토와 재구성이라 할 것이므로 지자체 인권정책을 형성하 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기관 내의 소통도 매우 중요함.
 - 가령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것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충분한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임.2)
 -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권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인권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음.

3. 지역에 기반한 정책개발

가.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

- 지역의 인권제도를 수립·이행함에 있어 지역의 인권상황과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그렇기 때문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본계획에도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함.
- 울산 동구청의 경우 주민전체의 80%가 대기업근로자이고 정규직/비정규직(2만6 천명) 근로자간 차별이 있는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인권'을 기본계획의

¹⁾ 광주시 인권정책연석회의에는 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인권회의(인권 NGO 단체 연석회의) 등이 참여하여 2012. 3. 구성 이후 현재까지 23회 개최

²⁾ 광주 광산구는 인권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운영하는데, 인권관련 업무 총괄부서와 복지정책과 등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구성되어 회의 개최와 공동워크숍 등을 진행

한 분야(전체4개 분야)로 하여 그 실행계획을 제시한바 있음.3)

○ 울산광역시 동구청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실행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분야	실행대상사업		
1. 비정규직 지원센터 강화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주노동자 노동상담 강화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 지원 ·청소년 노동지원사업 ·노동인권교육 시행		
2. 차별없는 동구청	·동구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면 시행 ·직장내 종사자 동등대우 조기실현		
3. 법·제도 정비	·관급공사 입찰업체의 노동법 준수의무규정 도입 ·노사민정 정책협의회 실질화		
4. 저소득빈곤노동자 지원대책	·구청단위의 소득증대사업 시행		
5. 산재 없는 직장	·각 기업별,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력 강화		

나.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인권에 대한 공감 형성 노력이 필요함.
- 우선 지자체 소속공무원 및 관련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겠지만,4) 점차 교육대상의 확대, 맞춤형 교육5) 등으로 확장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6)

³⁾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2013.4.), 185~199쪽 참조.

⁴⁾ 인권위는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훈련,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과정,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등의 인권교육 과정과 사안별 협의체(학교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등)를 운영하고 있어 인권교육에 있어 인권위의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각종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표준강의안과 함께 인권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영화, 인권UCC나 사진, 포스터 등을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인권교육센터 (www.edu.nhrc.go.kr)에서 자료 활용 가능).

⁵⁾ 가령 서울 관악구의 경우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노동교육'을 올 4월부터 실시하고 있음(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산하기관 대상 노동인권 교육,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 실시)

⁶⁾ 서울 성북구는 2013. 8.부터 시민들이 인권 책을 좀 더 가깝게 두고 편하게 읽으며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책읽기 다독다독 캠페인'을 전개중임.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구립도서관 9곳에 인권 책을 전문적으로 비

다. 주민의 일상과 연계

- 지자체는 인권제도가 실제 지역주민의 삶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성북구가 산책로 조성이나 복합청사 신축, 장난감 도서관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인권행정을 실현하려 한 것을 들 수 있음.7 복합청사의 경우 설계에서부터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인권행정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례8)
-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치법규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전술한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 내용에는 이러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도 포함 되며, 광주시의 자치법규 정비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바, 광주시 등의 인 권침해 자치법규정비 과정을 참조하여 적용해볼 수 있을 것임.
- 그동안 주거권이나 노동권 등의 일부 인권분야는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렵다고만 여겨져온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도 지자체의 권한 내에서 개선을 시도한 노력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들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가령 서울시는 2013. 7.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메뉴얼'을 제정·시 행하여 행정대집행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9
- 지방정부의 영향이 미치는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시도한 사례로서 서울 노원구청 등의 '생활임금' 도입이나, 울산 동구청의 비정규직 전

치하는 인권 서가('인권책방')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도서 구매 예산 가운데 인권 책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됨. 각종 구립센터과 청소년 시설 등 공공기관에도 인권 도서를 비치할 계획임.

⁷⁾ 성북구 인권조례 제24조는 구의 각종 시책과 사업이 주민의 권리보장과 인권문화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 시행 전후를 평가하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2012.4.),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2012.7.),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2012.), 2013. 세출예산 단위사업(2012.11.),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소(2012.12.),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2013.2.), 장난감 도서관(2013.3.), 조례 제·개정안(2013. 2~계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

⁸⁾ 성북구는 2015. 9. 완공될 예정인 안암동 복합청사의 설계안을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해 선정하고 인권건축감리단 자문도 받는 한편,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설문 조사와 네 차례 설명회도 거쳤음. 또한 준법 시공, 인권 약자를 위한 실내 건축가 집기 구매, 주민 참여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⁹⁾ 매뉴얼은 서울시 인권센터가 처음으로 접수한 사건인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권고 결정(2012. 12.)과 관련된 것으로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그 내용은 야간 등에 행정 대집행 금지,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협상기회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강제철거시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입회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임.

환 등이 있음.10)

IV. 마무리하며

- 2012. 4. 인권위가 권고를 할 시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10곳이었고 광주시 외에는 조례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현재조례 제정 지자체가 64곳이고, 비록 적극 이행하는 곳이 전체 지자체에 비할 때여전히 적지만 조금씩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인권제도에 대한고민도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함.
-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인권제도의 양상이 상이할지라도, 이제 '인권'은 지자체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는바, 여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참조 하여 강원도에 인권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됨.
- 인권위 또한 인권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자체 지원·협의, 모니 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인권제도의 확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인권위는 지자체 인권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올해에는 지역권역별로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지역에 따라 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의원 및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지방자치와 인권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계획

¹⁰⁾ 서울시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2013년부터 '생활임금'((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을 도입하였는데,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이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임. 이들 자치단체는 이러한 조치 이전에 청소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던 근로자들을 20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고용하여 용역회사에서 갖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바 있음. 울산 동구청의 경우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동구청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16명, 2013.1.) 등의 조치를 함.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울산 동구 인권위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박 영 철



인권기본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1.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는 2002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 형평운동의 발원지인 진주를 거쳐 2009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인권기본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 권고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 8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52곳에서 제정되었으며, 총 177곳(72.5%)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기초단체 최초로 2011년 북구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3년까지 5개 구·군과 울산광역시 등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완비된 곳으로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고, 동구와 북구에서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인권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역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제도의 정착화를 단순히 그 수적 증가만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다. 각지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본조례」의 실상을 보면, 단순히 인기영합적 제도 만들기 수준으로 보이거나 행정편의적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 특색에 걸맞은 인권제도의 중심축으로써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인권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11)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게는 20명에서 적게는 3명으로 구성된 인권담당관실 혹은 인권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수립의 과정에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어찌 보면 인권주류화를 선도적으로 구현해가는 모습도 발견되곤 한다. 단체장의 의지에만 의존했던, 그래서 수립여부가 불투명했던 '인권기 본계획'역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2)

온갖 부침 속에서도 「인권기본조례」는 서서히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더디지만 지역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다.

¹¹⁾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8권 제2호, 2013, 88면.

^{12) 2014} 한국인권도시백서(한국인권재단)에 따르면 2011년 광주광역시와 울산 동구이후 10여 곳에서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출범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관심이 더욱 확산되었고,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는 국제사회를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단위로 확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계망을 가지는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13)지난 2013년 제24차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과 인권도시 운동'을 다룬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가단위를 넘어 도시단위에서의 구체적 인권의무 이행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전히 인권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혼란스럽고, 난처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기구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인권사무가 서서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무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을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새롭게 구축되기 시작한 인권제도가 민선6기를 맞아 어떻게 계승·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도입과 주요 쟁점

1) 인권기본조례 도입의 배경과 확산

① 인권기본조례의 도입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책임지는 현장에 있을 때 존재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 그 존재의미다.

¹³⁾ 정영선, 앞의 글, 87면.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95년 이후 우리사회는 정작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이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제도나 기구에만 맡겨둔 채 지역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9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지역주민들의 구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가령, 친환경무상급식의 사례에서 보이듯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을 조례를 통해 규율하여 우리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하는 등다양한 방식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확장되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의 대한 욕구는 결국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욕구는 각 분야별, 영역별 조례의 제정을 통 해 제도화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개별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는 2005년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와 인권조례를 제정,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개소하여 사회통합교육, 기술교육, 다문화가정지원 등 다양한 다문화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드디어 포괄적인 인권조례라 불릴 수 있는 '인권기본 조례'가 등장하게 된다.

② 인권기본조례의 확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도한 표준안 개발은 1년의 연구 작업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2012년에 제시되었다.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은 인권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지역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중요한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표준안의 가장 큰 의의는 그 동안 지방자치

단체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원인과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인권업무가 국가사무인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인가 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당연히 부여된 책무라고 할 것이어서 인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사무로만 한정지어서는 아니 되며"라며 의견을 밝혔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사실상 조례제정의 확산에 불을 지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권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해온 이행계획을 분석해볼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177개 기관으로, 이는 전체 피권고기관 244개의 72.5%에 해당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14)

울산의 경우 북구와 동구에 이어 2012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남구, 중구, 울주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울산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모든 구·군까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정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제정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시민사회의 추동을 전제로 하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 이다. 물론 위로부터(top-down) 방식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군 가 인권을 '상품화'하여 성과주의의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 히 존재한다.

2) 인권기본조례 시행의 주요쟁점

제정된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을 살펴보면 조례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다.

서울특별시과 광주광역시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한 경우는 광역단위는 울산, 대전, 부산, 충청남도 정도이며 기초단위는 울산 북구와 동구, 서울 성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기도 광명시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15)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할 위원회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어 조례

¹⁴⁾ 안석모,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3, 4면.

¹⁵⁾ 이성훈,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 한국인권재단, 2014, 22면.

자체가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렵게 마련된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이 이토록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행이 더딘 지방자치단체의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례시행여부를 가르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례 이행을 견인할 동력의 마련이 중요하다.

「인권기본조례」에서 제시하는 지자체의 '인권사무'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울산광역시 북구와 동구의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조례제정을 주도했던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사례는 조례제정을 주도했던 인권단체는 없었지만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김광모 구의원의 노력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권교육 시행을 견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추진동력의 문제로 모아지는데 이는 지역의 기존 인권역량만으론 마련하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인권조례제정운동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사회 역량을 모아내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강력한 추진동력을 형성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둘째, 조례가 가진 기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인권기본조례」가 가진 기본적 한계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법'의 부재는 구체적인 정책과 지침의 부재를 의미하고,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깔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율성', '경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인권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공공성'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스럽다.

공공성(公共性)이란 사회 일반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일반의 여러 사람, 다시 말해 우리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 속에는 지역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지역의 특색과 삶의 방식에 맞는 그 지역만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만큼 '공공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사무와 국가예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다는 기본적인 제약 속에서,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앙의 관련부처의 정책과 지침에만 부여되는 성질이 되어버렸다.

중앙의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소위 '공공성'에 기반한 행정지침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이는 곧 관련부서의 업무로 확정되어 집행되지만, 근거도 불명확한(?) 새롭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인권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기준'에서 배제된 채공허한 주장으로 전략해버리기 일쑤다. 정책을 집행하면서도 결정권한이 극히 미비한 담당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인권정책의 시행을 점검하고 있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 '인권의 주류화'16) (mainstreaming human)를 실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예컨대, 서울 성북구, 서대문구, 광주 동구청 등은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기도 이전부터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기본조례」의 제정과 인권영향평가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권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는 그동안 재정문제와 공무원 정원규정을 이유로 전담부서 설치에 난색을 표명했던 기초자치단체의 변명을 무색하게 한다.

결국, 「인권기본조례」의 이행은 여전히 단체장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권기본조례」의 조문이 잘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 7월 제정이후 아직까지도 인권(증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조문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할 행정부의 실천 역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¹⁶⁾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평가와 과제-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전남 대학교 5.18연구소, 2012.

3.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의 발전방향

1)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사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948년 이후 60여 년 동안 인권은 유엔을 비롯한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제사회의 흐름은 인권의무 당 사자로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커졌으며, 이러한 역할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네트워크 또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7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인권을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도시를 선포한 이래 많은 도시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이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17)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국내와 국제사회의 인권도시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2013년 9월에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정부를 비롯한 18개국이 초안을 작 성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 과 인권도시 운동'을 다룬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 결의안은 각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지방정부가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지며, 인 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18)

지방화, 분권화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인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인권보호와 증진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나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실현의 노력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에서부터 실현되어야한다.

이렇듯 인권실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권침해 주체로서의 입장 과 인권보호 당사자로서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의 주체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출

¹⁷⁾ 안효섭,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4, 294면.

¹⁸⁾ 이성훈. 앞의 글. 31-32면.

범이후 인권정책은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인권상담 및 민원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9) 둘째, 인권 보호의 주체로서의 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인권침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공간인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할곳이다. 국제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인권이 실현되고 그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삶의 공간이 지역에서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인권보호와 증진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라는 점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선 행되어야 하면, 이러한 노력이 바로 「인권기본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20)

2)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안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위해서는 「인권기본조례」의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인권기본조례가 더 이상 '방치'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전담기구의 설치가 무엇보다중요하다. 다음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을 향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담당공무원은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지방의회 의원,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인권을 특정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단이거나 반민주적인 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수준으로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21)

① 인권전담 기구의 설치

• 인권전담 기구(사무조직)의 필요성

「인권기본조례」 실효적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의 설치이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¹⁹⁾ 국가인권위원회의 2012년 인권침해 상담건수 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666건, 차별행위가 158건, 진정 접수 사건중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335건, 차별행위가 455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성희롱 진정접수도 10건이나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통계』, 2013, 28면.

²⁰⁾ 안효섭, 앞의 글, 298-299면.

²¹⁾ 정영선, 앞의 글, 86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권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마련될 인권기본계획의 시행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밝히고 집행할 전담부서의 존재는 인권의 현실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위치를 점한다.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마련하는 '인권기본계획'의 시행은 담당부서가 아닌 전 청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 이행을 위해선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업무의 조절과 평가를 이끌어갈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에 언급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원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위원회의 회의 연락 정도의 부수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조례는 있으되 시행을 책임질 부서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 인권전담 사무조직의 설치현황

울산의 경우 '인권기본조례'를 전담하는 사무부서는 북구 기획홍보실, 동구 평생교 육과, 중구 자치행정과, 남구 기획예산실, 울주군 총무과, 울산시 자치행정과가 담당 부서로 지정되어있다.

그나마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울산시, 북구, 동구에서는 전담자는 없지만 부서에 담당자가 있어 겸업으로 인권사무를 시행해가고 있다. 중구, 남구, 울주군의 경우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기존 518선양과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인권담당부서를 강화하였다. 인권담당관실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5월에 인권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혁신기획관에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 3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상담 및 구제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성북구는 감사담당관실에 인권팀을 설치했으며, 서대문구 는 정책 기획 담당관실에 '인권팀'을 두고 있다. 2013년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인권담당관실(10명)을 신설했다.

• 인권전담 사무조직의 유형 및 위상

인권전담 사무조직이 꾸려져 있는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주와 서울이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모두 옴부즈만제도를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사무조직을 두고 있다.

첫째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담당자는 '인권'이외에 본연(?) 의 업무도 동시에 진행한다.

둘째는 인권전담부서로서 적은 수이지만 '인권팀'을 구성하여 '인권사무'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사례이다.

셋째는 인권전담부서로서 담당관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인 권전담부서'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2013년 3월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고 10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에 들어갔다. 담당관실은 인 권정책(3명), 교육지원(3명), 평생교육(3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역 시 인권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있다.

② 조례의 내용강화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전담부서 설치 조항 신설

제정된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전담부서 설치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울 산시 조례의 경우 "제17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전담기구의 설치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인권센터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놓아두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전담기구 설치'는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이기에 임 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인권영향평가 도입

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향평가는 정책형성과 집행상의 한 전략으로,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특정지역이나 집단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영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적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를 행정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기 때문에 국민이나시민을 위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 '인권의 주류화'(mainstreaming human)를 실현하기위한 강제적 이행기제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표준안에서 제안된 '인권영향평가' 조문을 도입하여 행정의 전반에 인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나 조례의 관할권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 성북구의 사례에서 보듯, 인권영향평가 도입, 적용의 방식을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행정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인권기본조례 상담 및 구제활동 강화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은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

제이다. 물론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존재한다면 인권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곧바로 해당 사업부서나 관리부서로, 혹은 감사담당부서로 이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침해 민원에 대한 처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국제조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판단기준 없이 일반 민원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에의거해 상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 권한을 가지고,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인권조약의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빠른 시정조치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그리고 인 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 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결과 2013 년의 경우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총 5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시 소속기관과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 인권침 해·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가 7인 합의제 형태의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인권침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인권기본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증진)위원회의 권한강화, 인권영향평가 도입과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행정, '인권의 주류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③ 인권거버넌스

• 인권(증진)위원회의 권한 강화

조례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구성이다. 인권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 시책, 인권교육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이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혹은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권위원회로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 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현재 조례내용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된 '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 '인권의 주류화'의 동력은 행정기관 내부에만 있지 않다. 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의 확대를 통해 인권전문가의 개입력을 높여가며 행정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사례1. 울산시 동구청

동구인권위원회는 2012년 11월 30일 산재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산재의 고통은 단순한 개별기업내의 문제를 넘어서는 지역의 주요한 인권사안이기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여 산재문제에 대응하고자 기획하였다. 2013년에는 장애인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2.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인권위원회 구성은 법률, 인권, 장애, 교육, 아동, 여성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11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주민 중 6명이 위촉되었다.

공개모집은 홈페이지, 공람, 이메일, 성북소리, 구청을 비롯한 구내 아파트단지 내 엘리베이터,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32명의 참여해, 최종 6명이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촉되었다.

성북구인권위원회는 매달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제로 제안된 권고안 심의 및 주문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주민인권선언 선언문 작 성 논의 등이며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구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권고안은 3호까지 나왔다. 1호는 노숙인의 자립지원 및 임시주거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상담조사 권고와 거리 노숙인 전수 및 상담조사 진행결과 및 겨울철 거리노숙인 보호 및 지원 계획보고(복지정책과)이고, 2호는 청소대행업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권고,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청소행정과)이고, 3호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관한 권고, 2기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기획경영과)이다.

사례3. 서울시

서울시는 총1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영은 정기회는 연4회, 임시회로 되어있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2012년 11월 27일 위촉이후 2013년 9월까지 총 17회의 회의와 워크숍 2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인권기본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부서장회의를 주관하고, 기본계획의 보완 및 대표사업 선정, 네이밍 작업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임시회와 1박2일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시 인권기본계획은 학술용역수행의 결과가 발표된 2012년 11월 이후, 장장 8 개월이라는 기간을 연장하며 인권기본계획이 인권의 보편적 원칙에 근거한 핵심과 제의 선정과 제출을 위해 시 인권담당관실, 담당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지역의 열악한 인권역량을 감안할 때 민관이 함께 '인권정책'을 마련해가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권사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인권단체, 대학교, 지역연구기관, 의원, 시의 담당부서 책임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민관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월 1회 개최하여 '인권정책'을 생산, 집행을 하고 있다.

④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인권교육 분야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자기 인권과 함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감을 향상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권교육을 전 생애에 거쳐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를 움직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인권교육이 더욱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22)

「인권기본조례」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중점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아 니라, 단체장이 지도 감독(출자·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 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법인, 단체 포함)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 등을 주요 대상 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실정은 광역단체는 서울, 광주, 부산 정도이며, 기초단체 는 서울 성북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북구 등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사례가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부서평가항목에 인권교육 이수항목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 인권강좌를 개설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좋은 시도라 고 보여진다.

⑤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 이후 「인권기본조례」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제정이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무'는 여전히 낯선 업무일 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선도적으로 '인권기본계획'이니 '인권지표'이니 실 험적인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선뜻 다가서질 못하고 있다.

현재 인권조례 담당자들의 요구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사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만 최소한 어떠한 일들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종의 '2기 인권조례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홍성수 교수의 의견처럼 1기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물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 2기는 「인권기본조례」가 각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살아 숨쉬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기본적인

²²⁾ 정영선, 앞의 글, 108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요구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답해야 한다.

4. 결론

인권은 행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 역시 인권적이어야 한다. 더디더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인권관련 계획이나 사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한발 한발을 내딛어야 한다. 많은 난관 속에서도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도입하고자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인권을 핵심가치로 삼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혹여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추방하지는 않았는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중앙정부 국가 운영의 가치에서 배제된 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난관에 봉착할지 예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당면해서는 이러한 난관을 일거에 돌파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선5기에 「인권기본조례」 제정등 인권의 제도화를 통해 우리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 금 이 순간에도 '인권의 주류화'를 실천하는 실험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 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주민들의 인권의식 발전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한 요구는 「인권기본조례」를 확산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국가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조직에만 의지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시기 「인권기본조례」의 시행경험이 일천한 탓에 가졌던 막연한 부담감을 털어내고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을 꽃피워야할 책임이 이제 민선 6기의 앞길에 놓여있다.

21세기의 화두 '인권'은 이미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존중받고 있다. 그러하기에 인권에 대한 존중도는 오늘날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인식을 벗어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품격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안석모,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13,
- 안효섭,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를 중심으로", 『충남 대학교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2014.
- 이성훈, "지방정부와 인권 연구보고서", 한국인권재단, 2014
- 정영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 집』 제18권 제2호, 2013.
-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평가와 과제-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지자체 인권업무 (부산인권기본계획) 사례

송 시 섭(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향후 과제

1.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개정과정23)

- 가. 2010. 12. 부산광역시 인권조례제정추진단 구성
- 나. 2011. 7. 조례안 성안, 시민설명회 개최
- 다. 2011. 12. 조례안 발의(이경혜의원등)
- 라. 2012. 2. 조례안공포
- 마. 2012. 3. 위원회 구성관련 간담회 개최
- 바. 2012. 9.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15명)
- 사. 2014. 3. 조례개정24)

2.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정

- 가. 2013. 3.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작성 소위원회 구성
- 나. 2013. 10.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안)작성 및 공청회
- 다. 2013. 12.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연구25)
- 라. 2014. 3. ~ 2014. 5.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기본계획 작성 소위원회 검토작업
- 마. 2014. 6. 기본계획 확정
- 바. 2014. 9. 기본계획관련 민·관 합동워크샵 개최

3. 작성 및 검토기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23) 2012. 2. 22.} 제정, 2014. 3. 19.자 개정

²⁴⁾ 개정의 주요내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함(제4조 제1항, 제4항),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 2),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제8조 제2항),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²⁵⁾ 강성권외 2, 부산발전연구원

가. 체계성

1) 헌법 및 지방자치법, 인권위원회법등 관련법령과의 연계성 강조

- 가) 기본계획의 규범적 근거라는 제목 하에, 국제규범(세계인권선언, 국제인 권장전, 국제인권규약등)과 국내 관련법률(헌법, 지방자치법, 장애인차별 금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그리고 부산시 인권조례를 토대로 하였음을 기술함
- 나) 나아가 조례 제4조에서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함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 였음을 언급함

2) 국가인권기본계획과의 연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기본계획의 규범적 지위를 자리매긲함

- 가) 시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1,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경과와 내용을 기술하였음
- 나) 나아가, 여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제정과 기본계획수립 현황을 소개함 으로써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타 시도의 기본계획수립과의 연 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

나. 보편성

1) 인권약자를 위한 기본계획 지양

가) 타 지자체의 기본계획에서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인권약자', '인권취약계 층'에 중점을 둔 기본계획의 주안점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지양하고자 함²⁶)

²⁶⁾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의 경우, 기본계획추진과제중 첫 번째로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이 언급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원칙에서도, '사회적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시민'인권기본계획이 아니라,

나) 기본계획의 비전을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으로 정하고, 정책목표를 '시민 및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과 증진'으로 정함으로써 '인권취약계층'보다 '시민'을 먼저 기술함으로써 이를 가시화하였음27)

2) 일반시민을 위한 기본계획 지향

- 가) 부산시민 전체의 인권의식함양과 인권문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하여 인권취약계층을 향한 맞춤형 접근방식을 지향하고자 함
- 나) 정책목표에서도 '인권인프라구축', '인권문화의 정착'등 법령, 제도, 행정, 문화등 시스템구축과 대중매체를 통한 인권문화·교육·홍보강화를 기초 로, 부산시민과 부산지역 인권단체 및 기관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버넌 스를 구축하고자 함

다. 포괄성

1) 시행계획과의 차별성

- 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개정조례)간의 역할분담을 기하여 거시적 방향제 시와 미시적 사업추진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기본계획에서는 비전, 목표, 전략과 추진사업의 리스트만 공유하고, 새로 운 분야별 정책목표를 향후 추가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음

2) 기본계획의 독자성확보

가) 사업위주의 기본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의 독자적인 자리매김이 어려우 므로 기본계획의 독자성을 확보토록 하는 시도

^{&#}x27;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인권기본계획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음. 울산시의 경우에도 인권증진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증진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므로 향후 기본계획의 확정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²⁷⁾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2012. 7.)의 경우, 기본전략을 인권교육의 강화, 인권정책추진체계마련에 두고, 분야 별 인권실천계획에서 취약계층(장애, 아동, 여성등)의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기술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함

나) 여타 시도의 기본계획을 참고로 하여 시행계획과 구분되는 기본계획만 의 독자영역을 구축하고자 함

라. 실효성

1) 인권센터의 실효적기능확보

- 가) 인권센터의 명칭변경(상담센터→인권센터: 개정조례)과 내부조직에 있어 서 상담을 넘어선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고자 하였음
- 나) 인권센터내에 인권보장팀28)을 만들도, 기획사무국을 통하여 시민의 인 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기획 및 효과적인 절차수립을 도모함

2) 실태조사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가) 실태조사(개정조례)를 통해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나)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사례들을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또 는 백서형태로 출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을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4. 향후과제

가. 인권센터의 출범

- 1) '공모'와 '독립적 법인'설립간의 고민29)
- 2) 타 지자체의 인권센터운영에 대한 실지조사
- 3)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시 소재 인권관련단체들 간의 협조를 통한 센터

²⁸⁾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이나 인력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예상하여 외부고 문계약 또는 공익인권관련변호사사무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제안함

²⁹⁾ 서울, 광주의 경우와 같이 인권센터를 시청기구로 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되나 독립성이 다소 약화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외부기관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안과 별도의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별도의 사전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인권센터의 설립 과정 자체가 조례 제·개정과 기본계획수립등과 같이 부산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인권단체들의 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상호 공유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길 제언함

설립

나. 기초 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 수립지원

- 1) 기초 지자체들의 인권조례제정운동 지원
- 2) 기본계획 수립시 자문 및 지원

다. 부산시민 인권헌장 제정

- 1) 서울시민 인권헌장으로부터의 배움30)
- 2) 부산시민 인권헌장의 독자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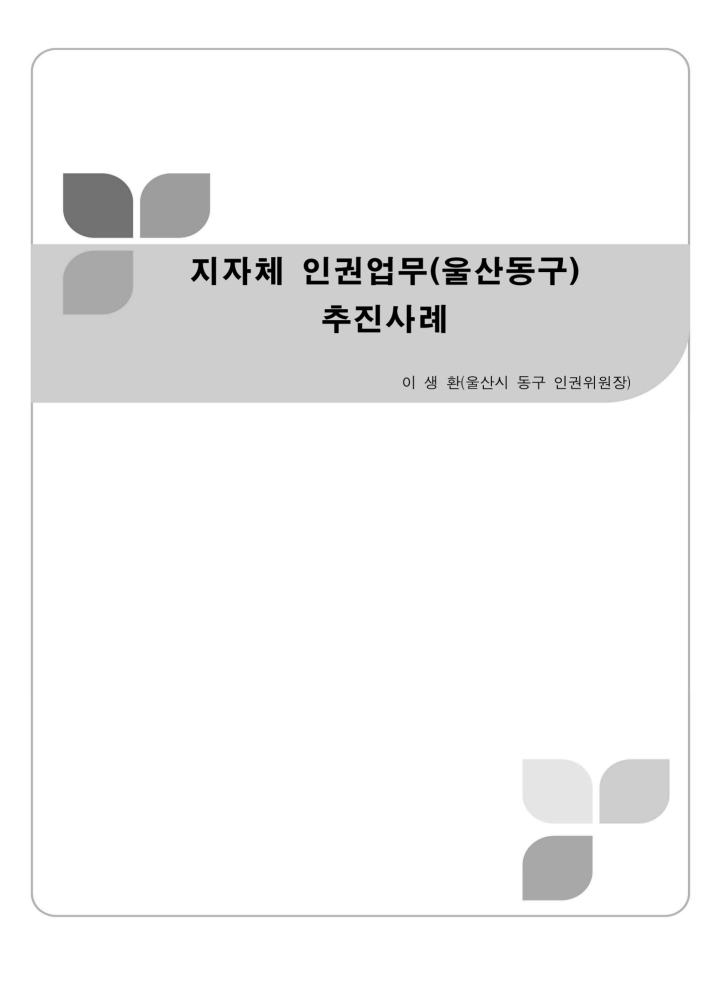
라. 부산시 인권의 날 제정

- 1) 인권의 날을 기하여 인권관련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포상(개정 조례내용 반영)
- 2) 인권의 날 행사를 통해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정립

마.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부산인권문화축제')

- 1) 인권취약계층만의 축제가 아닌 부산시민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유도
- 2) 기존의 '부산인권문화축제'를 부산시 차원에서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승격

³⁰⁾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경우, 시민위원을 모집하여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참고하여 진정한 시민인권헌장으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자체 인권업무(울산 동구) 추진사례

1. 준비시기

1) 2011년 11월 8일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조례에 따라 동구 인권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회 7회 개최
- 문제점 : 각 영역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 단체의 장으로 구성을 하였으나, 각 단위의 인권의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기본적인 안건을 심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 2012년 7월 전국 최초 기초단체 인권기본계획 수립

- 2012년 9월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 문제점: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인권기본계획이기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추계 등에 대하여 추산이 되지 못하였으며, 지역에서 가진 인프라 및 연구자료의 부족, 용역기간 또한 짧아 추상적인 면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인권기본계획을 알 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구체적 인권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2013년 1월 동구 인권도시 선포

- 동구 인권도시 선언문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평등한 대우는 하늘이 내린 보편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약속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권리침해와 차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에,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적 인권확립의 조류에 따라 인권을 존 중하고 실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인권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87년 노동자 대단결의 자랑 스러운 노동인권 역사를

품고 있는 동구는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 동구청은 노동의 가치가 인권과 어우러지고, 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동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모든 관계인들이 인권기준과 규범에 근거하여 동구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 "인권도시 울산동구"를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하고 선언한다.

2013. 1. 17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김 종 훈

2. 사업추진시기

1) 2013년 6월 인권두드림방 개소

- 인권 및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매월 1회로 14회 진행
- 문제점 : 인권상담을 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부족하다. 공공기관

의 자료 등으로 알리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담지 못하였다.

2) 인권감수성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공무원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진행 : 2013년 3회의 교육으로 5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4년은 250명 대상으로 1회 진행.
- 찾아가는 인권교육 진행 : 동구의 통장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2013년 7 곳, 2014년 13곳으로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 문제점 :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되어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러나 계급사회에 익숙해져 있는 집단적 움직임으로 인하여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간부급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인권모니터단 구성

- 구민인권학교를 개설하여 인권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
- 문제점: 동구청에서 동으로 일괄 인원 차출을 요구하여 각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 따라서 교육이 끝나면 그 것으로 인권학교도 끝이 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과 인권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4) 인권심포지엄 개최

-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6회 개최
- 문제점 :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당초 사업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진행한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심포지움이 다수의 주민

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5) 인권소식지 발간

- 동구 대왕암소식지에 인권사업
- 문제점 : 예산과 내용의 부족으로 대왕암 소식지로 대치한 것이다. 다달이 인 권소식이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인권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료지를 만들어야 한 다.

6) 노동인권실태조사 진행

- 동구는 노동자 도시로써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노동자 실태 조사작업과 교육교 재를 재작하는 예산반영
- 문제점 :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하여 노동인권실태조사를 인권실태 조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문별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를 구청장의 정치적인 색깔과 인권의 인식차이로 인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조차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3. 향후과제

1) 인권인프라 구축

-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진 인권위원들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인권을 어려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권모니터단 구성 및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단체의 인권사업을 강화하고, 주민들과의 유기적 접촉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에 맞는 인권사업 구축

- 광범위한 인권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를 감당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공무원 정원에 따라 인권담당자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적은 예산으로 인권사업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인권사업 중심을 어떻게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내려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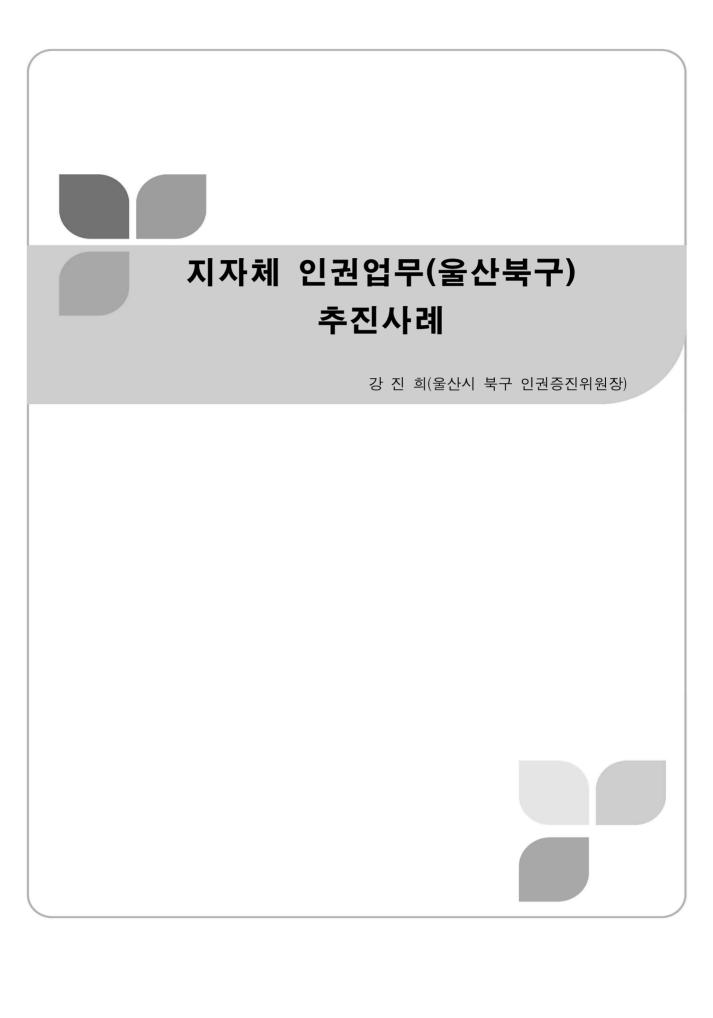
3) 단체장의 인권사업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반영이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단체장이 인권사업을 어떻게 보는야에 따라서 인권사업의 방향이 달라진다.

아직까지 인권이라함은 강한자가 약자에게 배풀어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또한 한국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좌편향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인 권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사업들이 단체장이 바뀌고 2015년에는 사업이 완전히 축소되고 조례에 명시된 공무원 인권교육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기존 2명의 인권담당자를 1명으로 줄여 인권사업에 관심이 없다. 인권위원회 조차도 인권의 감수성이 적은 일반 사회단체의 장을 인권위원으로 위촉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득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순번	사업명	사업시기	추진부서	담당
1	인권 조형물 설치	중장기사업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2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우선사업	기획홍보실	"
3	인권센터 설립	중장기사업	기획홍보실	"
4	인권영향평가 도입(체크리스트)	중장기사업	기획홍보실	n,
5	BSC성과평가 공통지표[인권행정실천도] 도입	중장기사업	기획홍보실	n,
6	인권상담의 날 운영	우선사업	기획홍보실	n,
7	북구 인권소식지 게재	우선사업	기획홍보실	n,
8	주민참여예산제 사회적약자 쿼터제 도입	우선사업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9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중장기사업	기획홍보실	의회법무
10	국가인권위 사이버교육	우선사업	총무과	인사담체담당
11	주민 인권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우선사업	주민참여과	주민참여담당
12	통장 인권교육	우선사업	주민참여과	자치행정담당
13	인권교육 시범연구학교 운영	우선사업	주민참여과	n
14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중장기사업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15	구립도서관 인권자료실 개관	우선사업	도서관과	중앙도서관담당
16	찾아가는 인권교육(자활사업 참여자)	우선사업	복지지원과	생활보장담당
17	찾아가는 인권교육(복지시설 등)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18	노인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확충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19	노인복지관 확충 및 접근성 강화	중장기사업	사회복지과	"
20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강화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21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22	양성평등정책수립을 위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23	인권안전망(성폭력 ·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개소)	중장기사업	사회복지과	"
24	인권안전망(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25	아동 · 청소년 참여권 보장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26	청소년 인권교육(청소년 단체)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27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28	다문화가정 상담 및 지원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29	언어소통권 확보 : 구청사 통번역시스템 구축	중장기사업	사회복지과	"
30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31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32	장애인 참여 확대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33	성년후견지원사업 계획 마련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3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35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중장기사업	사회복지과	"
36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중장기사업	사회복지과	"
37	장벽 없는 도시환경조성(BF인증취득) 계획	중장기사업	사회복지과	"
38	찾아가는 인권교육(지역아동센터)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39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확충	우선사업	사회복지과	"
40	노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	우선사업	경제일자리 과	노사협력담당
41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	우선사업	경제일자리 과	"
42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우선사업	경제일자리 과	n
43	노동복지타운 조성	중장기사업	경제일자리 과	n
44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우선사업	경제일자리 과	n
45	함께 걷는 북구(사람이 우선인 보행권)	우선사업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46	인권의 공원 조성	중장기사업	도시녹지과	공원녹지담당
47	노동자 재활트레이닝센터 운영	중장기사업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48	이주노동자 의료건강권 보장	중장기사업	보건소	진료담당
49	지방의원 인권 워크숍 개최	우선사업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인권 조형물 설치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 사업내용

O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조형물이 필요

🔲 현 실 태

O 전국 자치단체의 인권 조형물 설치 사례가 미미한 상황이며 서울시, 광주시 정도에서 인권 조형물을 설치하였음

<u></u> 검토시항

- 조형물 설치장소(구청 광장 또는 1층 민원실) 및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O 예술 창작품의 경우 사업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ᆌᄇᇪᄾᅅᄜ	그빔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구분	Į.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 인권 선언 제정	합계	10,000		10,000			
	국비						
	시비						
	구비	10,000		10,000			
	기타						

종합의견

O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함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검토결과 <u>우선사업(O)</u>,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 추진배경

- O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권의식 함양 필요
- O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권의 가치실현은 보다 중요시 되므로 지속적이고 특성화된 인권교육 시행

시업개요

- O 인권의식 함양 교육
- · 외부 전문강사 초청 인권강좌 개설 : 반기별 1회
-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 이수 권고
- O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 인권증진 워크숍 연 1회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2014년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반기별 1회/4주(주2회)/1일(2회)○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소계 국비 시비 구비	7,600 - - 7,600	
		- 연 1회	기타	-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2015년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반기별 1회/4주(주2회)/1일(2회)○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연 1회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7,600
	2016년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반기별 1회/4주(주2회)/1일(2회) ○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 연 1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7,600

			기타	
공무원 인권교육	2017년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반기별 1회/4주(주2회)/1일(2회) ○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 연 1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7,600
실시	2018년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반기별 1회/4주(주2회)/1일(2회) ○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최 - 연 1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7,6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O 인권증진 함양교육

· 일 시 : '14. 4월, 9월(4주, 주 2일, 일 2회 실시) 10:00 / 15:00

· 장 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생학습누림터, 문화예술회관

• 교육인원 : 회차별 2기 운영, 40명 내외

· 강 사 : 다양한 현장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강사 초청

· 강의주제 : 인권감수성 향상과 지자체 인권정책의 과제 등

· 소요예산 : 5,600천원

O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 일 자 : '14. 9월 중

· 장 소 : 미정

· 참석대상 : 인권증진위원, 인권업무 담당자, 외부 초청강사 등

· 주요내용 : 감성행정을 통한 주민 인권 향상 방안

· 소요예산 : 2,0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인권증진 업무를 본연의 업무에 부가되는 업무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경향

☞ 지속적이고 특성화된 인권 감수성 교육을 통해 행태개선 및 의식변화

기대효과

O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은 물론 인권의식 증진으로 인해 소통과 사회통합의 기초 토대 마련

인권센터 설립

검토결과 우선사업(), <u>중장기검토(〇)</u>,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시입내용

-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및 인권교육정책 중장기 로드맵 구축
- 주민인권선언 제정 및 인권문화제 운영

현실 태

- O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임
- O 인권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인권주간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인권 향상을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그 검토사항

- O 타당성 조사, 재원 확보 방안, 운영 주체 등
- O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센터 설립 근거 마련

개 정 내 용

조항 신설 (인권센터) ① 구청장은 인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O 인권문화제 행사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O 인권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섭외

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제발 제어면	게보기어면 그님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구분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권센터 설립	합계	544,000			180,000	182,000	182,000	
	국비							
	시비							
	구비	544,000			180,000	182,000	182,000	
	기타							

종합의견

O 인권센터 설립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권영향평가 도입[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u></u> 사업내용

- 인권도시 북구 실현을 위해서 행정에 인권패러다임을 도입
- 행정의 패러다임을 인권행정으로의 전환 촉진

🔲 현 실 태

○ 인권증진 관련 세부추진사업이 아직 미확정 단계로 평가를 논할 단계는 아님

<u></u> 검토사항

- O 인권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 O 인권영향평가 위원 선정
- O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확정
- 권리제약,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침해요소가 없는지 여부 등

- · 부정적, 차별적 용어 사용 여부
- · 정보의 접근성, 주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참여 보장 여부
-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및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

전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구분	연도별 투자계획					
/ T^F音で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5,000			5,000	10,000	10,000
인권 영향	국비						
	시비						
평가 도입	구비	25,000			5,000	10,000	10,000
	기타						

이 종합의견

○ 인권영향평가는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검토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함이 타당함

BSC성과평가 공통지표인권행정실천도] 도입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 사업내용

- 행정에 인권을 반영하기 위해 성과평가(달성도 평가) 공통지표로 평가 실시
- O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부서별로 인권개선과제를 발굴, 시행하여야 함

현 실 태

○ 인권증진에 관한 사무를 부담으로 느끼는 직원들이 많음

기 검토사항

O 성과평가 공통지표 결정

O 부서별 인권개선과제 발굴 및 실천, 인권교육 이수

인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구분	연도별 투자계획					
게구사업정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36,000			12,000	12,000	12,000
BSC성과평가	국비						
	시비						
공통지표 도입	구비	36,000			12,000	12,000	12,000
	기타						

종합의견

○ 인권행정실천도 도입은 인권 전담팀 신설 후 추진함이 타당함

인권 상담의 날 운영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	------------

지 추진배경

○ 지속적인 인권문화 확산 및 주민들의 인권증진 활동의 구체화를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이 요구됨

시업개요

O 대 상: 북구 구민

O 형 식 : 월 1회(정기 상담)

O 내 용 : 인권침해 및 차별상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 '진정접수') 및 법률상담, 행정상담 등

O 참여기관 : 북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울산인권

운동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울산지부 등

🔲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O 일 자 : '14. 7월부터 시행(매달 넷째주 금요일)

O 장 소 : 북구청 3층 감사장

O 상 담 사 : 부산인권사무소 조사관, 민변 변호사, 북구청 공인노무사, 울산인권 유동연대 등

O 홍보방법: 언론보도자료 제공, 무룡산 소식지,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회의 자료 제공

O 상담접수 : 북구청 기획홍보실 상담 예약 전화(052-241-7104) 접수

🔲 문제점 및 대책

- O 인권 상담의 특성상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 ☞ 상담인들의 방문시간을 조정하여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노출 되지않도록 조치

🔲 기대효과

O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권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증진 도시 조성에 기여

북구 인권소식지 게재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기획담당
---	---------------

추진배경

○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모든 구민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인권 행정으로의 전환 계기 마련

시업개요

○ 구 소식지(무룡산) 내 '인권소식' 코너 신설하여 인권 교육 자료 및 인권실태 소식 게재

🧾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O 일 자: '14. 7월 이휘공직선거법(선거일 6. 4.) 검토 후 시기 조정]
- O 내 용
- · 편집회의 개최(소식지 게재안 검토 등 연재방향 결정) : 매월 5일한
- · 인권소식 게재자료 초안 작성 : 매월 15일
 - * 울산 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자료 협조 요청
- · 인권소식 게재자료 검토 및 수정 : 매월 20일
- · 발행 및 배부 : 매월 25일한

기대효과

O 인권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여 주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

주민참여예산제 사회적약자 쿼터제 도입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추진배경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복지의 향상 도모
- O 사회적약자인 당사자를 참여시켜 권리증진 지향

시업개요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77명, 임기2년('13.7.1~'15.6.30)
- O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대상 예산교육 : 2회
- O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동별 지역토론회: 16회
- 주민참여예산 1·2차 분과위원회 개최 : 2회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

-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공개모집
 - O 2013년도 위원 위촉완료 : 임기2년('13.7.1~'15.6.30)
 - O 2015년도 위원 위촉시 쿼터제 도입
 - · 대 상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등
 - · 추진방법 : 공개모집시 15% 할당
 - · 추진과정 : 공개모집 → 모집완료 → 교육실시 → 위원위촉
 - → 참여위원활동(1·2차분과위원회 참여 등)

🔲 문제점 및 대책

- O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위주로 주민의견수렴 편중 우려
- ☞ 쿼터제 비율 조정 및 시민위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예산교육 철저

기대효과

O 사회적약자에게 소통의 기회 제공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 및 권리증진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거든겨고	으셔지어() 즈자기거무(○) 츠지브기()	기획홍보실
石工包叶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 추진불가()	의회법무담당

시엄내용

○ 자치법규에 사용된 반인권적 표현과 내용에 대한 조사로 인권 행정에

걸맞은 행정용어 개선

O 부서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행정적 용어 사용 지향

🔲 현 실 태

O 법제처,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정비 및 순화 대상 용어를 사용하여 법제심사를 하고 있어 크게 개선 요구되는 사항 없음.

일 용어정비 절차

○ 자치법규내 인권에 반하는 용어 정비에 있어, 국어의 특징상 쓰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규용어의 통일성을 위하여 '국립국어원 국어 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

🧾 연도별 투자계획 : 비예산 시업

종합의견

- O 자치법규 제·개정 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인권에 반하는 용어가 있다면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 O 중앙부처 등에서 순화대상 행정용어를 매년 고시하므로 이를 근거로 점차적 으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국가인권위 사이버교육

검토결과 <u>우선사업(O)</u>,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총무과 인사담당

추진배경

-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인권교육법이 제정되면, 교육이수시간이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가 강화됨
- 공무원 인권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이버 인권교육 채택

시업개요

- O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 이수 권고
- 연중 계속 실시
-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O 시 기: 2014년 연중

O 대 상: 전직원

○ 교육과정 : 인권의 이해, 행정과 인권 등 6개 과정

※ 웹 주소: http://humanrights.coti.go.kr/client/index.html

기대효과

○ 공무원 인권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인권증진을 고려한 행정활동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함

주민 인권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검토결과 우선사업(O),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주민참여과 주민참여담당

- 추진배경

- O 19만 구민의 인권에 대한 주민 담론의 장 마련으로 인권이해 증진 및 인권 의식 사회적 확산 필요
- 지역리더의 인권의식 제고를 통하여 우리 구의 인권침해 예방 및 조사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인권교육 시행

🔲 사업개요

- 지역리더 인권 증진 교육 :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과정 중 인권강의 포함
- O 찾아가는 인권교육
- ·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 자생단체 교육 시 인권교육 시행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자계획			
	2014년		소 계	600		
		○ 지역리더 인권교육 - 아카데미 과정 중 2회 실시	국 비			
			시비			
주민인권			구 비	600		
확산을			기타			
위한		○ 지역리더 인권교육 - 아카데미 과정 중 2회 실시 ○ 찾아가는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실시	소 계	900		
인권교육			국 비			
	2015년		시 비			
			구 비	900		
			기타			
	2016년	○ 지역리더 인권교육- 아카데미 과정 중 3회 실시○ 찾아가는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교육 확대 실시	소 계	1,200		
			국 비	-		
			시비	_		
			구비	1,200		
			기타	-		
- 주민인권	2017년	○ 지역리더 인권교육 - 아카데미 과정 중 3회 실시 ○ 찾아가는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	소 계	1,200		
확산을			국 비			
			시비			
위한 인권교육			구 비	1,200		
		교육 확대 실시	기타			
	2018년	○ 지역리더 인권교육 - 아카데미 과정 중 4회 실시 ○ 찾아가는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	소 계	1,500		
			국 비			
			시비			
			구 비	1,500		
		교육 확대강화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지역리더 인권증진 교육

O 시 기: '14. 6월 ~ 7월 중 / 2회 실시

O 장 소: 미정

○ 참석대상 : 동 주민자치위원 40명 정도

O 추진방법 : 외부 전문강사 초청 및 인권영화 상영 등

○ 주요내용 : 지역리더의 인권의식 제고 방안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소요예산 : 600천원

□ 찾아가는 인권교육 수요조사 실시

○ 조사시기 : '14. 10월 ~ 12월 중

O 조사대상 :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주민 조직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등(교육시기, 장소, 방법 등)

🔲 문제점 및 대책

○ 당연한 권리인 인권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 ☞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 제고

기대효과: 주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이해교육으로 비로소 인권을 권리로 인 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통장 인권교육

거두거리 9 서시어(^) 조자리거두() 초기보기()	주민참여과
검토결과 우선사업(O),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자치행정담당

지 추진배경

- 인권에 대한 담론 및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해 인권이해 증진 및 인권의식 사회적 확산 필요
- O 우리구의 인권침해 예방 및 조사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인권소양을 갖춘 인권활동가 양성

시업개요

- 통장 인권교육 사업 추진
 - · 기 간: 2014년 ~

· 내 용 : 인권의 가치 및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등 · 대 상 : 관내 8개동 통장

· 강 사 : 인권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강사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대상 : 8개동 통장 실시	소 계	1,200	
		○ 시기 : 통장학교(연4기)	국 비	_	
	2014년	○ 강사 : 인권교육 전문강사	시비	-	
		○ 내용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구 비	1,200	
통장 인권		교수기법 활용	기타	-	
교육		○ 대상 : 8개동 통장 실시	소 계	1,200	
		○ 시기 : 통장학교(연4기)	국 비	-	
	2015년	○ 강사 : 인권교육 전문강사	시비	-	
		○ 내용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구비	1,200	
		교수기법 활용	기타	-	
		○ 대상 : 8개동 통장 실시	소 계	1,200	
		○ 시기 : 통장학교(연4기)	국 비	-	
	2016년	○ 강사 : 인권교육 전문강사	시비	-	
		○ 내용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구 비	1,200	
		교수기법 활용	기타	-	
		○ 대상 : 8개동 통장 실시	소 계	1,200	
 통장 인권		○ 시기 : 통장학교(연4기)	국 비	-	
교육	2017년	○ 강사 : 인권교육 전문강사	시비	-	
 		○ 내용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구 비	1,200	
		교수기법 활용	기타	-	
		○ 대상 : 8개동 통장 실시	소 계	1,200	
		○ 시기 : 통장학교(연4기)	국 비	_	
	2018년	○ 강사 : 인권교육 전문강사	시비	-	
		○ 내용 :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구 비	1,200	
		교수기법 활용	기타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통장 인권교육

O 시 기 : '14. 9월 ~ 10월(통장학교 실시-연4기)

O 대 상: 관내 8개동 통장

O 내 용 : 인권의 가치 및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등

O 추진계획

· 통장 인권교육 계획 수립 : 8월

· 1회 추경예산 확보 : 4월

· 인권교육 전문강사 초빙 : 9월

○ 소요예산 : 1,200천원

🔲 기대효과

○ 통장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인권행정가 양성으로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북구 인권 증진 기반마련

인권교육 시범연구학교 운영

│ 거두겨고 으서시어(○)	주민참여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자치행정담당

지 추진배경

- O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침 해,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인권침해 발생
- 학교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누구나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인식 확대 필요

🔲 사업개요

- O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 · 대 상 : 관내 초(19)·중(12)·고등학교(9)
- · 초·중고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공모
- ·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씩) 및 지원

일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소 계	15,000
		공모 : 2월	국 비	-
	2014년	○ 신청사업 심사 : 3월	시비	-
 인권교육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씩)	구 비	15,000
시범연구학		및 지원 : 3월	기타	-
		○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소 계	15,000
교 운영		공모 : 2월	국 비	-
	2015년	○ 신청사업 심사 : 3월	시비	-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씩)	구 비	15,000
		및 지원 : 3월	기타	_
			소 계	15,000
	2016년	○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공모 : 2 월	국비	- 10,000
		○	시 비	_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씩)	구비	15,000
		및 지원 : 3월	기 타	-
		○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소 계	15,000
인권교육		공모 : 2월	국비	
 시범연구학	2017년	○ 신청사업 심사 : 3월	시비	-
교 운영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씩)	구비	15,000
		및 지원 : 3월	기타	-
		○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소 계	15,000
		공모 : 2월	국 비	-
	2018년	○ 신청사업 심사 : 3월	시비	-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씩)	구 비	15,000
		및 지원 : 3월	기타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O 시 기: '14. 2월 ~ '15. 3월

- O 대 상 : 관내 초(19)·중(12)·고등학교(9)
- O 추진계획
- ·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공모 : 2. 17. ~ 2. 28.
- ·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3월
- · 시범학교 선정(초·중·고 1개교) 및 지원 : 3월
- ·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 9월 ~ 10월
- · 교육경비 정산 : '15. 3월
- O 소요예산 : 15,000천원(학교별 5,000천원 정도)

🔲 기대효과

O 아동과 청소년의 주 활동지인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자존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지역인재 육성

공공시설 접근성 보장

검토결과 우선사업(), <u>중장기검토(O)</u>, 추진불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사업내용

- 공공시설 신축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 보급
 - ※ <u>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u> : 성별, 연령, 국적, 문화, 장애의 유 무와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서비스를 구 현하기 위한 디자인
- O 관내 전역 공공시설 접근성 보장 실현

🧾 현 실 태

O 현재 공공시설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진입로 턱제거, 점자블럭 설치 등)에 머무르고 있음

기 검토사항

O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공공시설 신축공사 설계시 누구나 이용이 수월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세구사협명	구분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꼬
	합계	60,000			20,000	20,000	20,000	
공공시설 접근성 보장	국비							기조 곳곳
	시비							기존 공공 시설물 수 선비용
	구비	60,000			20,000	20,000	20,000	선비용
	기타							

조합의견

O 기존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정비 및 향후 공공시설물 건립시 유니버셜 디자 인 도입에 따른 중장기적 예산확보 필요

구립도서관 인권자료실 개관

 거두겨고 으서시어/○ \	도서관과
검토결과 우선사업(O),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중앙도서관담당

지 추진배경

- O 구립도서관 자료실 내 "인권 관련 도서" 코너를 개설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고조 필요
- 인권도서 전시와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시업개요

- O "인권 도서" 코너 개설·운영
- 인권 도서전시회 및 영화 상영: 12월
-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 개설·운영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			
			소계	500	
		○ "인권 도서" 코너 개설·운영	국비	-	
	2014년	○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	시비	-	
		○ 인권 강좌 개설·운영	구비	500	
			기타		
			소계	500	
구립도서관		○ "인권 도서" 코너 운영	국 비	-	
인권자료실	2015년	○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	시비	_	
개관		○ 인권 강좌 개설·운영	구 비	500	
			기타	-	
	2016년	○ "인권 도서" 코너 운영	소 계	500	
			국 비	-	
		○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	시비	-	
		○ 인권 강좌 개설·운영	구 비	500	
			기타	-	
			소 계	500	
		○ "인권 도서" 코너 운영	국 비	-	
	2017년	○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	시비	-	
- 구립도서관		○ 인권 강좌 개설·운영	구 비	500	
			기타	-	
인권자료실			소 계	500	
개관		○ "인권 도서" 코너 운영	국비	-	
	2018년	○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	시비	_	
		○ 인권 강좌 개설·운영	구비	500	
			기타	-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인권 관련 도서" 코너 개설·운영

O 기 간: 2014. 5월 ~ 6월

O 대 상 :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

O 소요예산 : 500천원

O 내 용 : 구립도서관 자료실 내에 "인권 관련 도서" 코너 개설

□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회

O 기 간: 2014. 12. 2.(화) ~ 12. 12.(금)

O 장 소 : 중앙도서관 로비 및 세미나실

O 내 용: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인권 도서 전시회 및 영화

상영회 개최

□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 개설·운영

○ 시 기: 2014년 봄학기 교육·문화 프로그램 시행 시

O 대 상 : 중앙도서관

O 내 용: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설 시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 신설

- 문제점 및 대책

- O 도서 구입 예산 부족 및 공간 협소
- · 매년 구립도서관별 도서구입 예산이(구비) 10,000천원으로 이용자 희망 도서 및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를 구입하기에도 부족한 실정
- ☞ 이용자 및 규모가 제일 큰 중앙도서관에 우선 설치
-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 개설에 따른 문제
- · 관련 강좌 개설시 강사 인프라 부족 및 수강 미달로 인한 폐강 우려
- ☞ 주관 부서(기획홍보실)에 강사 및 프로그램 자료 제공 요청

🔲 기대효과

○ 인권도서 코너 운영과 전시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자활사업 참여자)

거두거리	○ 서시어(○)	복지지원과
石上包叶	<u>우선사업(○)</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생활보장담당

🔲 추진배경

-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교육 부족
- O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 사업개요

- O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 ·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 매년 3월 및 수시
- · 전문가 초빙강의 : 연 1회
- · 교육기관 인권교육 수강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분기 1회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자활사업 참여자 인권 교육	소 계	400	
			국 비		
	2014년	- 교육자료 교육⇒정기,수시	시비		
		- 전문가 초빙강의⇒연 1회	구 비		
		- 종사자 교육 수강⇒분기 1회	기타	400	
	2015년	○ 자활사업 참여자 인권 교육 - 교육자료 교육⇒정기,수시	소 계	400	
 찾아가는			국 비		
1			시비		
인권교육		- 전문가 초빙강의⇒연 1회	구 비		
		- 종사자 교육 수강⇒분기 1회	기 타	400	
	2016년	○ 자활사업 참여자 인권 교육	소 계	400	
			국 비		
		- 교육자료 교육⇒정기,수시 - 전문가 초빙강의⇒연 1회	시비		
			구 비		
		- 종사자 교육 수강⇒분기 1회	기타	400	

찾아가는	2017년	 ○ 자활사업 참여자 인권 교육 - 교육자료 교육⇒정기,수시 - 전문가 초빙강의⇒연 1회 - 종사자 교육 수강⇒분기 1회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400
인권교육	2018년	 ○ 자활사업 참여자 인권 교육 - 교육자료 교육⇒정기,수시 - 전문가 초빙강의⇒연 1회 - 종사자 교육 수강⇒분기 1회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4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 일 시 : '14. 3월 및 수시○ 장 소 : 보훈회관 2층 강당/지역자활센터 교육장

○ 교육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80명

O 강의주제 : 인권교육센터 강의자료 활용

O 소요예산 : 비예산

□ 전문가 초빙강의

O 일 자: '14. 9월

O 장 소 : 보훈회관 2층 강당

○ 참석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80명

O 주요내용: 미정

O 소요예산 : 400천원

□ 교육기관 인권교육 수강

O 일 자 : 분기별

O 참석대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8명

O 주요내용 : 인권을 주제로 한 강좌 수강

O 소요예산 : 비예산

🔲 문제점 및 대책

O 특이사항 없음

🔲 기대효과

O 인권에 대한 이해 확산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존엄성을 동일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의식 증진에 기여

찾아가는 인권교육복지시설 등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추진배경

O 사회복지설 등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보호기관 으로서 의 역할 제고

█ 사업개요

- O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연1회 이상, 시설별 자체교육
- 어린이집 교사 인권교육 : 연 1회, 집합교육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 O 대 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노인시설 8, 장애인시설14)
- 교육방법 : 시설별 자체 교육(연 1회 이상)
- O 소요예산 : 비예산
- □ 어린이집 교사 인권교육
- O 일 시 : '14. 5월(예정)
- O 장 소 :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교육대상 : 어린이집 보육교사 500명 정도
- O 교육방법 : 강사 초빙 집합교육
- 소요예산 : 비예산

🔲 문제점 및 대책

O 특이사항 없음

기대효과

O 생활인들을 내 가족같이 보호하고 재활하는 인권의식 전환 기회 마련

노인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확충

거두거리	○ 서기어(○) 즈자기거드() 츠기브기()	사회복지과
石노包叶	<u>우선사업(○)</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노인복지담당

지 추진배경

- O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황임 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흡함
- O 차별, 소외, 학대받는 노인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함

시업개요

- O 노인시설 지도 감독 강화 : 반기별 또는 수시
- O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 : 년1회 이상
- O 정서생활지원 사업 강화



조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천원)

r].6]		서귀번 호기계치		-11 • 1:12)
단위	서무뱀	연차별 추진계획	E 7	기 중기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 계획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u>소계</u> 국비	24,062
	2014년	반기별, 수시	시비	
	2011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년1회	구비	24,062
		○ 정서지원사업 강화 : 연중	기타	
しつごろうご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소 계	25,265
노인존엄과		· 반기별, 수시	국 비	
인권보호를	2015년	전기로, 기의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년1회	시비	
위한		○ 정서지원사업 강화 : 연중	구비	25,265
기반확충		0 1 12 13 001. 20	기타	
	2016년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반기별, 수시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년1회 ○ 정서지원사업 강화 : 연중 ○ 노인대상 인권교육 실시 : 년1회 	소 계	26,528
			국비	
			시비	
			구비	26,528
			기타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반기별, 수시	소 계	27,854
			국 비	
	2017년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년1회	시비	
노인존엄과		○ 정서지원사업 강화 : 연중	구비	27,854
인권보호를		○ 노인대상 인권교육 실시 : 년1회	기타	,
위한 기반확충			소 계	29,246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 반기별, 수시	국비	
/1世号 0 	2018년	- : 만기일, ㅜ^!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년1회	시비	
	2010년	○ 조단사를 당시자 한잔교육 : 현화 ○ 정서지원사업 강화 : 연중	, ,	20.244
		○ '경시시천사'급 '정화' . 현3 ○ 노인대상 인권교육 실시: 년1회	구비	29,246
		· - 그런데 6 단한포막 글이, 현1억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 반기별 또는 수시
 - O 점검일시 : 정기 매년 2월, 9월/ 수시
 - 점검대상 : 노인시설 8개소(노인여가 1, 노인의료 5, 재가노인 2)
 - O 점 검 자 : 노인복지담당 주무관 외 1
 - O 점검방법 : 점검 매뉴얼에 따른 서류 및 방문 점검
- □ 노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년1회, 시설별 자체 추진

□ 정서생활지원 사업 추진

O 추진기간 : 연중

O 장 소 : 울산북구 노인복지관

○ 주요내용 : 심리상담전문가 배치 → 노인 일반상담, 전문상담,

노인학대상담, 치매 종합상담 등

🔲 문제점 및 대책

- 가정 내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크므로 드러난 학대보다 실제 존재하는 학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 □ 노인 문제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변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O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노인복지관 확충 및 접근성 강화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u></u> 사업내용

- O 노인복지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 O 지역간 균형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양정염포권역 제2노인복지관 건립

🔲 현 실 태

- O 현재 노인복지관은 우리 구 북쪽에 위치하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 O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함

김토사항

○ 셔틀버스 운행 및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종합의견

○ 셔틀버스 운행 및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존 경로당맞춤프로그램 등을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강화

거두겨리 으셨시어(^) 조자키거두()	츠zl브zl/ \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十位至/()	_도 인복지담당

- 추진배경

- O 홀로 사는 어르신의 현황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사각지 대 최소화
- O 저소득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사업개요

- 독거노인 생활안정지원 : 경로식당, 재가노인식사배달, 우유배달
- O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O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일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지	- 계 획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소 계	789,215	
		○ 재기노인식사배달 : 90명, 주5회	국비	242,682	
	2014년	○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 383명 ○ 노인돌봄서비스 : 연중	시비	383,134	
		○ 독가노인 응급인전 돌보마사업 : 연중	구 비	155,899	
		○ 씨밀레 진정한 친구 사업	기타	7,500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소 계	840,163	
홀로 사는		○ 재기노인식사배달 : 주5회	국비	263,621	
어르신에	2015년	○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 주5회 ○ 노인돌봄서비스 : 연중	시비	401,182	
대한 돌봄 강화		○ 독개노인 응급인전 돌보마시업 : 연중	구비	167,860	
7034		○ 씨밀레 진정한 친구 사업	기타	7,500	
	2016년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 재가노인식사배달 : 주5회 ○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 : 주5회 ○ 노인돌봄서비스 : 연중 ○ 독가노인 응급인전 돌보마사업 : 연중 ○ 씨밀레 진정한 친구 사업	소계	879,456	
			국비	274,882	
			시비	420,071	
			구비	177,003	
			기타	7,500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 재가노인식사배달 : 주5회	소 계	920,713	
			국 비	286,706	
	2017년	○ 독거노인 시랑의 우유배달 : 주5회 ○ 노인돌봄서비스 : 연중	시비	439,904	
홀로 시는		○ 독가노인 응급인전 돌보마시엄: 연중	구 비	186,603	
어르신에 대한 <u>돌</u> 봄 강화		○ 씨밀레 진정한 친구 사업	기타	7,500	
		○ 경로식당 운영 : 3개소	소 계	958,361	
		, , _ , , _ ,	국 비	299,121	
			시비	456,065	
		○ 독가노인 응급인전 돌보마시엄: 연중	구 비	195,675	
		○ 씨밀레 진정한 친구 사업	기타	7,5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
 - O 경로식당 운영
 - · 대 상 :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420명
 - · 운영장소 : 3개소(어르신행복식당, 밥퍼공동체, 사랑의지팡이)
 - · 운영방법 : 위탁운영(1인 1식)
 - O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 대 상 :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 이용 불가능 저소득 노인
 - · 운영방법 : 위탁운영(1인 1식)
 - O 독거노인 우유배달 사업
 - · 대 상 : 저소득 독거노인 383명
 - · 운영방법 : 주 5~6회 우유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 노인돌봄서비스

- O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 대 상 :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 · 수행기관 :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 주요내용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해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연계 등
- O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 대 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등급 외 A, B인 어르신
- · 수행기관 : 2개소(북구지역자활센터,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 및 활동보조 제공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 O 대 상: 만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 · 1순위 :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 2순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 · 3순위 : 지자체 인정자(총 인원의 10% 초과 금지)
- O 운영방법 :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 씨밀레 진정한 친구 사업

- O 대 상 :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O 운영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요보호 어르신의

말동무, 가사 지원 서비스 등 제공

· 수행기관 : 북구노인복지관

· 근무시간 : 월 36시간(주3회, 일3시간)

🔲 문제점 및 대책

- O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움
 - ☞ 노인돌보미 교육 강화 및 인력 충원으로 내실있는 현황조사 실시

기대효과

O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노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여성과 이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거두겨귀	우선사업(○)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石工包円	<u>十心ハ南(〇)</u> , するハ日上(), 十つ宮/(()	여성청소년담당

지 추진배경

- O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지도 만들기
- 골목, 집 앞 등의 보안등의 조도를 조절하여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
- 민간의 '아동·여성지킴이단'과 함께 진행

시업개요

- O 마을지도 만들기
- · 민간단체와 함께 시설, 공원 등 실태 점검
- O 보안등 밝히기
- 안전한 귀가길 조성을 위한 보안등 실태 조사 및 현지 확인



조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u> </u>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자	계획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2014년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관계 부서 간의 회의 및 협의 진행 - 상반기 1회(공동 현지 실태조사)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 추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비예 산 - -
	2015년	○ 공무원 및 민간인 워크숍 및 교육실시- 연1회 이상○ 안전한 마을 지도 제작- 8개(동별)제작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5,000
	2016년	○ 공무원 및 민간인 워크숍 및 교육실시 - 연1회 이상 ○ 안전한 마을 지도 수정작업 및 확대할 계획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5,000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2017년	○ 공무원 및 민간인 워크숍 및 교육실시- 연1회 이상○ 안전한 마을 지도 수정작업 및 확대여부 검토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5,000
	2018년	○ 공무원 및 민간인 워크숍 및 교육실시- 연1회 이상○ 안전한 마을 지도 수정작업 및 확대여부검토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5,0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계획 및 준비

○ 일 시 : '14. 4월[~] 6월 ○ 장 소 : 북구 소회의실 외

O 참석인원 : 관련 부서간의 실태조사 및 토의

O 소요예산 : 비예산

□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예산 확보조치

O 일 자: '14.8~9월 중

O 장 소: 미정

O 내 용 : 관련 부서간의 회의 및 실태조사 완료후 예산확보

🔲 문제점 및 대책

- O 가로등, 공원 등의 관리부서가 상호 달라 실태조사가 용이하지 않음
- ☞ 가로등 및 공원조성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설치토록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지도제작으로 수행함이 적정함

기대효과

○ 여성, 아동, 다문화국민, 노인 등 대체로 연약한 구민을 상시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와 범죄로부터 사전 예방 또는 보호되는데 큰 효과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

고드거리 0 시기어/○\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u>우선사업(O)</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여성청소년담당

- 추진배경

- O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기초를 위한 성별 분리통계 및 성인지 예산/정책을 구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축 및 게시
- O 형식적인 성인지 정책의 구체화

시업개요

- O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구체화
- ·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인지 예산/정책의 구체화



일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 획				
		○ 비러(크레 그리) 미 디어기시세 레퀴	소 계	2,000			
		○ 법령(조례,규칙)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국 비	-			
	2014년	- GIA(여성기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비	-			
양성평등정	_	시스템)에 자료입력	구 비	2,000			
책 수립을		○ 성인지예산(서)자료 발간(기획홍보실)	기타	-			
위한 성별분리		○ 비견(크레 크리) 미 디어지시네 레티	소 계	2,000			
통계 구축		○ 법령(조례,규칙)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국 비				
0/11 1 4	2015년	- GIA(여성기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비				
		시스템)에 자료입력	구 비	2,000			
		○ 성인지예산(서)자료 발간(기획홍보실)	기타				
	2016년	○ 법령(조례,규칙)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 GIA에 자료입력 ○ 성인지예산(서)자료 발간(기획홍보실)	소 계	2,000			
			국비				
			시비	2 000			
			구비기타	2,000			
양성평등정			소계	2,000			
책 수립을		○ 법령(조례,규칙) 및 단위사업에 대한	국비				
위한 성별분리 통계 구축	2017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CLA에 기 기 의 기	시비				
		- GIA에 자료입력	구 비	2,000			
		○ 성인지예산(서)자료 발간(기획홍보실)	기타				
		○ 법령(조례,규칙) 및 단위사업에 대한	소계	2,000			
	2018년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 GIA에 자료입력	국비				
			시비	2.000			
		○ 성인지예산(서)자료 발간(기획홍보실)	구비	2,000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성인지 예산서 자료 발간

O 일 시: '14. 1월

O 대 상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및 특화사

업 등

□ 단위사업 선정

○ 일 시: '14. 5~6월

O 기 관: 울산발전연구원

O 대 상: 성인지 예산관련 부서별 단위사업 선정

문제점 및 대책

O 성과목표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정하기 곤란함

기대효과

- O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성인지 사업예산(서)으로 쉽게 확인 및 판단 가능
- O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별 수혜분석 등을 누구나 볼 수 있어 성평등 기대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인권안전망(성폭력기정폭력 통합상담소 개소)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〇) ,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 사업내용

- O 구민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
- 관내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역할 외에 성폭력분야까지 통합관리 필요

🔲 현 실 태

-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북구가정폭력상담소,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로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나, 이에 수반되는 성폭력 교정, 치료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실정

검토사항

O 성 및 가정폭력 통합하여 상담소를 운영함이 적정함

○ 관내 상담소(2개소)를 가정폭력상담소 역할외 통합 가능여부 점검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꾀보기어면	구분	년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50,000			50,000	50,000	50,000
가정·성폭력	국비						
피해회복 및	시비						
재발방지사업	구비	150,000			50,000	50,000	50,000
	기타						

종합의견

○ 통합상담소 운영에 따른 재정적 인력지원 및 사업예산 가능여부 확인

인권안전맹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검토결과 우선사업(○)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A도설과 <u>구선사 협(O)</u> , 중경기검도(), 구선물기()	여성청소년담당

조 추진배경

- O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안전망을 구축·제공하여 제2차, 제3차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
- O 청소년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

시업개요

- O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개최
- · 북구지역 청소년밀집지역 파악
- O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
- O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



조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개최	소 계	3,619	
		- 연1회 ○ 도시 소 원시된 사다 기페 으여	국 비	1,425	
	2014년	○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 - 연 1회	시비	712	
		○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	구 비	1,482	
		- 월 1회	기타	-	
인권안전망		○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	소 계	2,850	
(찾아가는		- 연 1회	국 비	1,426	
상담센터	2015년	○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	시비	712	
		- 월 1회	구 비	712	
운영)		- 결 1외	기타		
	2016년	○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 연 1회○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 월 1회	소계	2,850	
			국비	1,426	
			시비	712	
			구비	712	
			기타		
		○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 - 연 1회	소계	2,850	
			국비	1,426	
 인권안전망	2017년	○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	시비	712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 월 1회	구비	712	
		- E 1-1	기타		
		○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	소계	2,850	
		- 연 1회	국비	1,426	
	2018년	○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 - 월 1회	시비	712	
			구비	712	
		- 2 14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협의회 개최

O 일 시: 2014년 4월중

O 장 소: 3층 상황실

○ 참석대상 : 위원 14명

○ 주요내용 : 북구지역 청소년밀집지역 파악 및 아웃리치 활동 활성화

O 소요예산 : 770천원

□ 도심 속 청소년 상담 카페 운영(아웃리치)

O 시 기: 2014년 5월중

O 대 상: 위기(가능)청소년 및 청소년

○ 주요내용 : 위기(가능)청소년 발굴 및 연계, 홍보, 간이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연계와 홍보 활동

O 소요예산 : 1,760천원

□ 위기청소년 발굴 활동 지원(아웃리치)

○ 시 기: 2014년 2월부터

O 장 소: 농소1~3동, 연암화봉동, 명촌일대

O 일 정:월 1회(20:00~22:00)

O 방 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법무부 범죄예방 북구지구 연합 야간 순회 활동

O 주요내용 : 위기(가능)청소년 조기 발견 지원 및 홍보

○ 소요예산 : 1,09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북구 지역은 청소년 밀집지역이 분산되어 있어 위기 청소년의 발굴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아웃리치 사업 및 학교와의 위기 청소년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

🔲 기대효과

O 거리의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상담 등 조기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을 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출의 장기화를 예방

이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지도거리 이 시기어/ () 조지리거드() 초기보기()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여성청소년담당

지 추진배경

O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활성화

<u></u> 사업개요

O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III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자계 등			
		> 하지 내려시아이런 코레 그리	소 계	2,800	
		○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 구성	국 비	1,400	
	2014년	-연1회/중·고·대학생/20명	시비	700	
		○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업 계획 수립	구비	700	
			기타		
아동		○ 권시11킨서이이징 고게 그서	소계	2,800	
청소년		○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 구성	국비	1,400	
 참여권	2015년	-연1회/중·고·대학생/20명	시비	700	
		○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 계획 수립	구비	700	
보장			기타		
	2016년	○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 구성	소계	2,800	
			국비	1,400	
		-연1회/중·고·대학생/20명	시비	700	
		○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업 계획 수립	구비	700	
			기타		
		○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 구성	소계	2,800	
아동 청소년 참여권	• • • • • •		국비	1,400	
	2017년	-연1회/중고·대학생/20명	시비	700	
		○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업 계획 수립	구비	700	
- '-			기타	2.000	
보장	2018년	○ 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 구성	소계	2,800	
		- 0	국비	1,400	

-연1회/중고·대학생/20명	시비	700
○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업 계획 수립	기타	7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청소년 참여단체의 공개적 구성 및 계획

O 청소년 참여위원회(북구): 연 1회

O 대 상: 지역내 청소년(9~24세)

O 인 원: 20명 내외

O 선발방식 : 공개모집 및 추천

O 선발비율: 일반청소년 80%, 소수청소년 20%

※소수청소년 : 근로, 북한이탈, 한부모가정, 다문화, 장애, 비학생 등

O 활동내용 : 지역 청소년정책 의견제시,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워크숍, 캠페인 개최, 지역 청소년행사 주관 또는 참여

등

🔲 문제점 및 대책

- O 청소년은 학교 생활과 병행하여 위원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및 행사에 따른 시간의 제약이 많고 시험기간이나 학원 등의 개인 사정에 따른 활동 제약이 많음.
- ☞ 청소년 참여 위원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병행

기대효과

○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및 평가를 통해 구정에 참여토록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

청소년 인권 교육청소년 단체

검토결과 우선사업(○)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在 生色叶 	여성청소년담당

지 추진배경

○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인간의 가치 및 인간 존중을 알 수 있도록 인권교육 실시

시업개요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강화
 - ※ 지역아동센터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기실시

일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2014~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자	계획	
청소년 인권 교육	2014년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 연 1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000	
	2015년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 연 1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000	
	2016년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 연 1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000	
청소년 인권 교육	2017년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 연 1회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1,000	
	2018년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 연 1회	소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기 타	1,000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인권교육

O 시 기 : 2014년 ~, 연1회

O 대 상 :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O 내 용 : 북구 관내 청소년 관련시설 및 단체의 아동청소년 및 교사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기대효과

O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 제고

이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mark>,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지 추진배경

○ 최근 어려워진 경기 상황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거나 무급 연장 근로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이 많음

🔲 사업개요

- 청소년 노동인권(최저임금 등) 관련 소책자 제작 배포
-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 🔲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 비예산 사업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청소년 노동인권 책자 제작 및 배포
- · 일 자 : 제작('14. 11월), 배포('14. 12월 이후)
- · 제작방법 : 경제일자리과 노무사와 협의하여 제작
- · 배포방법 :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을 통한 배부
- O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 · 일 자 : '14. 6월 시행
- · 방 법
 - 북구 청소년복지센터 및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배너 설치

기대효과

O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직업 가치관과 바른 경제관념 확립에 기여

다문화기정 상담 및 지원

거두겨리 오서시어(^)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여성청소년담당

시 수진배경

- 최근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필요성 증대
- O 언어·문화적 차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 등 사회통합 저해 우려

시업개요

-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
-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O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	<u> </u>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 계 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운영	소 계	301,099
		○ 바우처 사업-사회통합교육	국 비	200,269
	2014년	○ 다문화기족 조기정착 지원 및	시 비	52,915
			구 비	47,915
		인식개선사업	기타	-
		○ 다문화기 족 지원센터 1개소운영	소계	301,099
		○ 바우처 사업-사회통합교육	국비	200,269
	2015년	○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시비	52,915
디문화가정			구 비	47,915
상담 및		인식개선사업	기타	
	2016년	○ 다문화기족지원센터 1개소운영○ 바우처 사업-사회통합교육○ 다문화기족 조기정착 지원 및인식개선사업	소 계	301,099
지원 			국비	200,269
			시비	52,915
			구 비	47,915
			기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운영 ○ 바우처 사업-사회통합교육	소계	301,099
			국 비	200,269
	2017년	○ 다문화기족 조기정착 지원 및	시비	52,915
		이식개선사업	구 비	47,915
		원식개선수r업 	기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운영	소 계	301,099
디문화가정		○ 바우처 사업-사회통합교육	국 비	200,269
상담 및	2018년		시비	52,915
지원		○ 다문화기족 조기정착 지원 및	구 비	47,915
	인식개선사업	인식개선사업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연중)

O 일 시 : 2014년 1월~12월

O 대 상: 다문화가족 자녀, 부부 등

○ 주요내용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자조모임,

개인·가족상담, 방문교육지원서비스 등

□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O 일 시: 2014년 2월~2015년 1월

O 대 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

○ 주요내용 : 사회통합교육(한글·요리·문화), 사회통합도우미, 파견 서비스(출산,

자녀교육, 한국생활지원, 기족상담 등)

□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O 일 시: 2014년 3월~12월

O 대 상: 다문화가족 여성, 자녀

○ 주요내용 : 부부관계 증진서비스, 부모-자녀 관계개선 서비스, 가족 간 심리적

갈등해소 프로그램 지워 등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간 한국생활을 한 다문화 여성에 대한 차별화 교육 필요
- □ 다문화 여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취업소양교육 등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O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O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배려가 있는 사회통합 기대

언어소통권 확보: 구청사 통번역시스템 구축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시입내용

-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전담인력 선발·양성 관리 필요
- 통번역 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현 실 태

- O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시 통번역 필요
- O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 서비스 협조 받고 있는 상황

검토사항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추진
- O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통번역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순으로 전담인력 양성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구분				연도별 -	투자계획		
세구사업명	丁亚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63,008		15,752	15,752	15,752	15,752
구청사	국비	44,104		11,026	11,026	11,026	11,026
통번역	시비	9,452		2,363	2,363	2,363	2,363
시스템 구축	구비	9,452		2,363	2,363	2,363	2,363
	기타						

종합의견

O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추진을 계획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결과 <u>우선사업(〇)</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

지 추진배경

O 우리 구 거주 등록장애인은 7,427명으로 인구대비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음

○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 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 한 제도개선 필요

시업개요

- O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 학생교육 실시 : 60회(상반기)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장애인분과) 및 장애인단체와 인식개선 캠페인 : 연2회
-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 · 시 기 : 2016년 중
- · 방 법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및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 · 주요내용 : 장애인 인권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장애인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 계	7,200
인식개선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	국비	
교육 및	2014년	싱년키(3월~7월)/60회기	시비	
윤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 연 2 회	구비	7,200
캠페인		○ 경에인 한국/11선 캠페인: 한2회 	기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계	7,200
	_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	국비	-
	2015년	상반기(3월~7월)/60회기	시비	-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 연2회	구 비	7,200
			기타	-
عالمال 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상반기(3월~7월)/60회기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 연2회 	소계	7,200
장애인			국 비	_
인식개선	2016년		시비	-
교육 및			구 비	7,200
캠페인			기타	-
			소 계	7,500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국 비	-
	2017년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	시비	-
	2017 년	상반기(3월~7월)/65회기	구 비	7,500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 연2회	기타	-

	2018년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 교육: 상반기(3월~7월)/65회기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 연2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7,500 - - 7,500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2016년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 기간 : 3월~12월 방법 : 타시군구 인권조례 검토 후 조례제정 계획 수립, 추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 - -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O 일 시: '14. 4월 ~ 7월중

○ 대 상 : 지역내 중고등학교 학생 2,000명 정도

○ 교육방법 : 학교별 신청 접수 후 학교 방문 교육

O 강 사: 장애인식개선 센터 소속 강사 초빙(10명 정도)

○ 교육내용 :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후천적 장애 사전예방 교육 및

유형별 장애체험

○ 소요예산 : 6,700천원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O 일 시: '14. 5월, 10월중 예정

○ 장 소 :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화봉사거리 및 학교 교문 앞 등

○ 참석인원 : 15명 내외(지역사회복지 장애인분과위원 및 장애인 단체 등)

○ 캠페인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배부 및 거리 캠페인

O 소요예산 : 500천원

문제점 및 대책

- O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만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 장애인 스스로의 의식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

🔲 기대효과

O 학생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조기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권익 및 인권증진 향상에 기여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거두겨코 으서시어(^)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u>우선사업(O)</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장애인복지담당

조 주진배경

O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방문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함.

시업개요

-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연 1회 실시
-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지원 강화
- · 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 파악 및 운영실태 점검
-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파악 및 교육 지원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 차 별 추 진 계 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11 → 11 → 12 → 12 → 12 → 12 → 12 →	소 계	-	
 장애인	2014년	○ 실태조사단 구성 여 1 전	국 비	-	
		- 연 1회 ○ 실태조사 교육 실시	시비	-	
인권		- 연 1회	구 비	-	
실태조사		- 년 1월	기타	-	
교육 및		○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시행	소 계	10,000	
행정지원	2015년	- 반기별 1회	국 비	-	
강화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	시비	-	
		지원 강화, 인권교육 피악 및 지원	구 비	10,000	

		- 반기별 1회	기타	-
		○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시행	소 계	10,000
		- 반기별 1회	국 비	-
	2016년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	시비	-
		자원 강화, 인권교육 파악 및 지원	구 비	10,000
		- 반기별 1회	기타	-
		○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시행	소 계	10,000
	2017년	 ○ 경기적인 인단결대조가 지행 - 반기별 1회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인권교육 파악 및 지원 - 반기별 1회 	국 비	-
 장애인			시비	-
인권			구비	10,000
실태조사			기타	-
교육 및 행정지원 강화	2018년	○ 건기건() (이기시메그) / 기체	소 계	10,000
		 ○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시행 - 반기별 1회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안권교육 파악 및 지원 - 반기별 1회 	국 비	-
			시비	-
			구 비	10,000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실태조사단 구성 및 교육 실시

O 일 자 : '14. 10월중

O 장 소: 미정

O 참석대상 : 실태조사단원, 시설 종사자 등

O 주요내용

· 각 시설별 실태조사단원 추천(다양한 계층 참여 유도)

• 인권 교육시 시설 종사자 참석 조치

· 각 시설 방문시 지도감독 반드시 이행

🔲 문제점 및 대책

O 특이사항 없음

기대효과

○ 북구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지원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 참여 확대

거두거리 이 사기어() 조기되기()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장애인복지담당

지 추진배경

- O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지원 강화
- O 자치법규에 규정된 장애인관련 위원회를 정상화하여 더욱 평등한사회 건설을 위한 발판 마련

시업개요

-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지원 강화
-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지원(분기별1회)
- 북구 각종 위원회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델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지	· 계 획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지원	소 계	50,000		
	2014년	국 비	-			
장애인		OH OT	시비	-		
인권센터			구 비	50,000		
운영 지원 등		○ 북구 각종 위원회에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 수시	기타	-		
	2015년	n5년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지원		60,000		
	2013원	- 지원사항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 비	-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	시비	-
		실태 조사, 장애인 인권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구비	60,000
		○ 북구 각종 위원회에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 수시	기타	-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재위탁	소 계	65,000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지원 - 지원사항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국비	-
	2016년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 실태 조사 장애인 일권	시비	-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구비	65,000
		○ 북구 각종 위원회에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 수시	기타	-
 장애인	2017년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지원	소 계	65,000
0 개년 인권센터		- 지원사항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	국 비	-
		실태 조사, 장애인 인권	시비	-
등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구 비	65,000
O		○ 북구 각종 위원회에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 수시	기타	-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지원	소 계	65,000
		- 지원사항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	국 비	-
	2018년	실태 조사, 장애인 인권	시비	
		전문가 양성 교육 등	구비	65,000
		○ 북구 각종 위원회에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 수시	기타	-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지원

○ 기 관 명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대표 : 성현정)

O 위탁기간: '13. 9. 1 ~ '16. 7. 31

○ 지원내역 : 기본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등

○ 주요사업: 장애인 인권상담, 인권침해 사례 접수,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주민교육,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표 개발 등

○ 소요예산 : 50,000천원

□ 북구 각종 위원회 장애당사자 참여 보장

O 시 기: '14년 ~ 지속

O 대 상: 위원회 운영 부서

○ 주요내용 :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을 위촉하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의

장애인 비율을 높여 장애인당시자 참여 보장

- 장애인 인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운영지원이 필요
- ☞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
-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인 위원회도 있으므로, 의무적인 장애인 위원 위촉은 전문가의 영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의사결정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 일반 주민을 위촉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장애인 위원 위촉 협조

기대효과

○ 위원회의 장애인당사자 참여율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인권 증진 기여

성년후견지원사업 계획 마련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지 추진배경

- 재산관리에 치중하고 본인의 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널리 이용되지 못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성년후견제로 대체
- O 요보호 발달장애인 성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 성격의 후견인을 양성하여 저비용 양질의 후견인 지원체계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실 현 필요

시업개요

O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 등록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사항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활동비 지원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활동비 지원	소 계	4,662	
	2014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국 비	3,729	
	2014 년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시비	933	
발달	딘	공공후견인 활동(월10만원)	구 비	-	
장애인 성년		- 지원인원 : 3명	기타	-	
^{70 년} 후견인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활동비 지원	소 계	4,662	
기원 지원	2015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국 비	3,729	
	- 2013 년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시비	933	
	긴	공공후견인 활동(월10만원)	구 비	-	
		- 지원인원 : 3명	기타	-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활동비 지원	소 계	5,000			
	2016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국 비	4,000			
발달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시비	1,000			
장애인	년	공공후견인 활동(월10만원)	구 비	-			
성년		- 지원인원 : 5명	기타	-			
후견인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활동비 지원	소 계	5,000			
지원	2017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국 비	4,000			
. –	년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시비	1,000			
		공공후견인 활동(월10만원)	구비	_			

	- 지원인원 : 5명	기타	-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및 활동비 지원	소 계	5,000
2018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국 비	4,000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시비	1,000
년	공공후견인 활동(월10만원)	구 비	_
	- 지원인원 : 5명	기타	-

🧾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O 일 시 : 연중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발달장에인 「장애인복지법」 상지적지폐성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신청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구청

O 지원내용

· 후견심판 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10만워

○ 소요예산 : 4,662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O '13.7월부터 사업 시행되었으나 공공후견인 교육기관 선정이 늦어졌고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 ☞ 발달장애 성년후견인 사업의 반상회보 및 매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기대효과

O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권리보호 가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시업 확대

거두겨 고 으서시어/○\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u>우선사업(○)</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장애인복지담당

- 추진배경

○ 중증 장애 1~2급으로 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실질적 인 장애인 이동권 실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 삶의 질 항상

시업개요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활성화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 점진적 확대

일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지	· 계 획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소 계	124,650	
		- 기 간: 2014. 2 ~ 2015. 1	국 비	-	
	2014년	- 대 상 : 바우처대상에서 제외된	시비	124,650	
		2급, 3급 장애인	구 비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주요내용 : 신체활동, 가시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기타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소 계	130,000	
사업 확대		- 기 간: 2015. 2 ~ 2016. 1	국 비	-	
	2015년	- 대 상 : 바우처대상에서 제외된	시비	130,000	
		2급, 3급 장애인	구비	-	
		- 주요내용 : 신체활동, 가시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기타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소 계	135,000	
	2016년	- 기 간: 2016. 2 ~ 2017. 1	국 비	-	
		- 대 상 : 바우처대상에서 제외된	시비	135,000	
		2급, 3급 장애인	구비	-	
		- 주요내용 : 신체활동, 가시활동, 시회활동 등 지원	기타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소 계	135,000	
중증장애인		- 기 간: 2017. 2 ~ 2018. 1	국비		
 활동지원	2017년	- 대 상 : 바우처대상에서 제외된	시비	135,000	
사업 확대	_	2급, 3급 장애인	구비	-	
		- 주요내용 : 신체활동, 가시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기타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소계	135,000	
		- 기 간: 2018. 2 ~ 2019. 1	국비	-	
	2018년	- 대 상 : 바우처대상에서 제외된	시비	135,000	
		2급, 3급 장애인	구 비	-	
		- 주요내용 : 신체활동, 가시활동, 시회활동 등 지원	기타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 O 기 간: 2014 ~ 지속
- O 대 상: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사람으로
- 1·2급 국비 바우처 급여결정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사람
- 1·2급 국비 바우처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결정을 받은 사람
- · 3급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로 중복장애가 있는 자
- O 사 업 량: 39명
- O 지원시간 : 월 100 ~ 120시간
- O 주요내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기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및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 O 시 기: 장기검토
- O 사 유
-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은 관련 지침상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 불가함
- · 지원대상자 확대는 울산시에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구비로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시 구비부담 가중으로 장기적 검토 필요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기대효과

○ 장애바우처 이용자의 지원시간 부족과 중증장애인으로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된 2급, 3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통해 자립의지를 높이고자 함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시입내용

○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정책 발굴 및 반영을 위해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적 상황, 교육실태, 욕구, 필요한 서비스는 물론 가족의 애로 사항 등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전수조사 필요

현실 태

O 등록장애인의 경우 기본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자료가 없어 조사대상 파악에 어려움 있음

<u></u> 검토사항

O 미등록장애인 발굴을 통해 인권의 기본적 안전망을 더욱 강하게 구성하여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 필요

인도별 투자계획

(단위: 천원)

ᆁᄇᆀ어ᄜ	ユㅂ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구분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0,000					20,000
 장애인	국비						
	시비						
전수조사	구비	20,000					20,000
	기타						

조합의견

O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내 장애인 단체 등과 민관협력망 구축하여 조사 대상 발굴 및 조사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거두겨코 ○서시어(\ 즈자키거두(() 츠키브키()	사회복지과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 추진불가()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내용

- O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마다 장애 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실현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이동 및 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현실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음

그 검토사항

O 건축허가 및 준공 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으로 기준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공

🔲 연도별 투자계획

계별계어면	그ㅂ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구분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애인	합계	25,900	4,900	5,000	5,000	5,500	5,500
편의시설	국비						
	시비						
설치사항	구비	25,900	4,900	5,000	5,000	5,500	5,500
사전점검	기타						
장애인	합계	17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0,000
편의시설	국비						
	시비	85,000	15,000	15,000	15,000	15,000	25,000
지원센터	구비	85,000	15,000	15,000	15,000	15,000	25,000
	기타						

종합의견

○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강화

장벽 없는 도시환경조성(BF인증취득)계획

거드거리 (○ 서기어() 즈지키거드(○) 츠키브키()	사회복지과
日上色叶口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 추진불가()	장애인복지담당

█ 사업내용

O 장애인, 노인 등 노약자가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

🔲 현 실 태

- O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실시로 도로, 공원, 교통수단, 건축물 등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건축주 등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검사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미이행되고 있음
- O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인식 및 홍보 부족

검토시항

O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홍보와 안내 강화 후 도로, 공원, 건축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 시행

이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구분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30,000 10,000 20,000 장벽 없는 국비 시비 도시환경조성(B F인증취득) 구비 30,000 10,000 20,000 기타

종합의견

O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의 설치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찾아가는 인권교육(지역이동센터)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고 추진배경

- O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 인지 알고 아동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성장 할 수 있도록 함
- O 아동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실현

시업개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권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O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추진
 - 인권교육 실시 : 년 1회 이상
 - · 교육방법 : 각 시설별 자체 교육/외부강사 연계
- O 아동 자치회 시범 운영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소 계	1,100		
		○ 아동권리 및 인권 규정 마련 : 11개소	국 비	550		
	2014년	○ 인권교육 추진 : 11개소	시비	550		
		○ 아동자치회 시범운영: 2개소	구 비			
		- 10 111 112 012 11	기타			
크]스님쇼] 도 기)도]	2015년		소 계	1,100		
지역이동센터		○ 이동관리 및 인권 규정 운용 : 11개소	국비	550		
운영 지원		○ 인권교육 추진 : 11개소	시비	550		
		○ 아동자치회 시범운영 : 4개소	구 비			
		70 7 7 7 7 7 2 0 7 2 7	기타			
		○ 이동권리 및 인권 규정 운용: 11개소	소계	1,320		
	2016년	○ 인권교육 추진 : 11개소	국 비	660		
		아동자치회 시범운영: 4개소	7 -1			

			시 비 구 비 기 타	660
지역이동센터	2017년	○ 아동권리 및 인권 규정 운용: 11개소○ 인권교육 추진: 11개소○ 아동자치회 시범운영: 4개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320 660 660
운영 지원	2018년	○ 아동권리 및 인권 규정 운용: 11개소○ 인권교육 추진: 11개소○ 아동자치회 시범운영: 4개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320 660 660

- □ 지역아동센터 인권 규정 마련
- O 대상: 11개소
- O 내용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규정 운용
- □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 O 인권교육 실시 : 연1회 이상
- O 대 상: 11개소
- 교육방법
 - 각 시설별 자체 교육(아동 및 종사자)
 - 지역아동센터 인권교육 의무화
 - 외부 전문 강사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인권·권리 관련 교육 추진
- 소요예산 : 6,160천원
- □ 지역아동센터 아동자치회 시범 운영
- 대상 : 2개소/월 1회
- O 내용 : 아동자치를 통한 권리 옹호 직접 참여

- 문제점 및 대책

- O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전문강사 발굴
- → 시민단체·기관의 전문강사 인력 풀 활용 및 종사자 교육 추진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권 침해 방지 및 보장 강화

지역이동센터 복지교사 확충

거드거리	○ 사기어(○) 조자기거드() 초기보기()	사회복지과
石工包叶	<u>우선사업(O)</u>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드림스타트담당

조 주진배경

- 저소득층 증가 및 가정해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증가로 지역아 동센터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으나 종사자의 업무 과다로 인해 이직률이 잦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종사자의 업무 및 아 동보호 부담 완화로 처우개선 증진
- 아동복지교사의 확충으로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기능 강화를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원 서비스 제공

시업개요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 · 사업기간 : 연중(매년 재배치)
 - 사업내용
 - 탄력 근무제 운용(주5일 및 단시간제 근무교사)
 -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 지역사회복지사 배치로 아동복지교사 노무·행정 전담관리

조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 획			
			소 계	124,000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채용	국 비	62,000		
	2014년		시비	62,000		
아동복지교		-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배치	구 비			
			기타	-		
사	2015년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채용 -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배치	소 계	124,000		
지원사업			국 비	62,000		
			시 비	62,000		
			구 비			
			기타	-		
아동복지교	2016년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채용	소 계	144,000		
사		-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배치	국 비	72,000		

			시비	72,000
			구 비	
			기타	-
			소 계	144,000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채용	국 비	72,000
	2017년	-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배치	시비	72,000
지원사업			구 비	
			기타	-
	2018년	○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채용	소 계	144,000
			국 비	72,000
			시비	72,000
		- 지역이동센터 11개소 배치	구 비	
			기타	-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O 기 간 : 연중

O 대 상: 지역아동센터 11개소

○ 모집방법 : 공개모집

O 지원인원 : 11명

- 분야별 교사 채용(주5일제 8, 단시간제 3)

O 배치방법 : 시설별 분야 및 과목별 교사 수요 파악 후 협의

○ 소요예산 : 124백만원

- 1센터 1교사 전담 지원은 불가하며 1교사 2개소 이상 연계배치를 원칙으로 함
- ☞ 시설당 1일 5시간 이상 아동복지교사 배치로 기존 종사자의 아동보호 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

🔲 기대효과

○ 아동복지교사 배치로 기존 종사자의 아동보호 부담 완화 및 처우개선

노동의 역사를 기억하는 도시

거두거리 ㅇ 서시어/○ \	경제일자리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노사협력담당

조 주진배경

O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현재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의 근간이 된역사를 기억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 확산의 필요

시업개요

- O 노동역사관 설치 운영
- · 노동역사 자료 수집·보존관리 실시
- · 노동역사 자료 전시 및 관람 프로그램 운영
- · 노동역사 기행, 교육, 학술 및 토론회 개최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 획	
		○ 1 도어기의 의라 제청 시기	소 계	60,000
		○ 노동역사관 관람체험: 상시 ○ 노도역시 기교 수지 및 기괴, 사시	국 비	-
	2014년	○ 노동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 상시 ○ 역사기항: 격월 5회	시비	-
		○ 역사이카데마: 3~12월(연10회)	구 비	60,000
			기타	-
 노동의	2015년	○ 노동역사관 관람·체험: 상시○ 노동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 상시○ 역사기항: 격월 5회○ 역사아카데미: 3~12월(연10회)	소 계	60,000
			국 비	
역사를			시비	
기억하는			구 비	60,000
도시 			기타	
		○ 노동역사관 관람·체험: 상시 ○ 노동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 상시 ○ 역사기행: 격월 5회	소 계	60,000
			국 비	
	2016년		시비	
	○ 역사기행: 격월 5의 ○ 역사아카테미: 3~12월(연10회)		구비	60,000
		기타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소 계	60,000
		○ 노동역사관 관람·체험: 상시	국 비	
노동의	2017년	○ 노동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 상시○ 역사기행: 격월 5회○ 역사아카데미: 3~12월(연10회)	시비	
			구 비	60,000
역사를			기타	
기억하는	2018년 ○ 노동역사 자료 -	○ 노동역사관 관람·체험: 상시 ○ 노동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 상시 ○ 역사기행: 격월 5회	소 계	60,000
도시			국 비	
			시비	
			구 비	60,000
			기타	

□ 역사관 관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상시)

○ 일 시 : 매주 화~일 오전 9시~오후 18시 (입장시간은 17시 마감)

O 장 소 :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복도 및 로비 전시관

○ 주요내용 : 전시관 관람, 노동역사 해설, 체험 활동 운영

□ 노동역사 자료 수집 및 관리(상시)

- O 노동역사 자료 수집(상시)
- 노동역사 자료 DB화 및 인터넷 열람 제공(상시)

□ 역사 기획 전시

O 추진시기 : 연 4회(3월, 5월, 7월, 11월)

O 대 상 : 노동역사관 내방객

O 내 용

· 개관 기념 특별전시(3월), 노동절역사 역사적 유래(5월), 1987 노동자대투쟁 사진 전시(7월), 전태일 특별 기획전시(11월)

□ 노동 역사 기행. 강좌 및 학술사업

- O 노동역사 기행
- · 기 간 : 격월 총 5회 (3월, 5월, 7월, 9월, 11월)
- · 참석대상 : 역사기행 참가자 모집으로 매회 20명 내외
- ·내 용
 - 월별 테마를 잡아 역사 기행 실시
- O 역사 아카데미
- · 기 간 : 3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총 10회 개최
- · 장 소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교육장
- ·내 용
 - 총 10가지 주제로 울산의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강좌 개최
 - 전체 강좌의 70% 이상을 참가한 수강자에게 역사아카데미 수료증 발급

문제점 및 대책

- O 노동 및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 부족 및 편견 존재
- ☞ 가벼운 주제부터 접근하여 공통된 화제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

기대효과

- O 지역 주민 구성의 다수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 확산
- O 울산의 근현대사의 한 축으로 노동역사 관련 학술 연구 인프라 역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

거두겨 고 으셔지어(○)	경제일자리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노사협력담당

추진배경

- O 중소기업 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노동관계법 상담을 통한 노동인권 향상 도 모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준수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및 교육 필요

🔲 사업개요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을 통한 노동법 상시 상담 체계 구축
- O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대회 실시
- O 노동인권 교육 실시

III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소 계	30,400
		- 상시 상담실 운영	국 비	-
	2014년	○ 치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건기대회	시비	-
		- 연 1회	구비	23,400
		노동인권 교육과정 운영	기타	7,000
l EalHalvi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소 계	13,000
노동기본권이			국비	
보장되는	2015년	- 상시 상담실 운영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건기대회	시비	
일터			구비	6,000
		- 연 1회	기타	7,000
	2016년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상시 상담실 운영○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건기대회- 연 1회	소 계	13,000
			국 비	
			시비	
			구 비	6,000
			기타	7,000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소 계	13,000
		- 상시 상담실 운영	국 비	
	2017년	- ' 경기' 경고 글 전 경 ○ 차별없는 세상을 항한 시민건기대회	시비	
노동기본권이		- 연 1회	구 비	6,000
 보장되는		- 현1의	기타	7,000
일터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소계	13,000
		- 상시 상담실 운영	국비	
	2018년	- 경시 경험을 눈성 ○ 치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건기대회	시비	
		- 연 1회	구비	6,000
		- 신 1억	기타	7,0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운영
- O 추진기간 : 연중 지속

○ 추진내용 : 공인노무사 채용을 통해 노동관계 법률상담 및 인사노무 컨설팅 상시 추진 및 노사관계 책자 발간

○ 소요예산 : 6,000천원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시민걷기 대회

O 일 자: '14. 4월 중

O 장 소 : 명촌근린공원 ~ 외솔교

○ 참석대상 : 신청자 500명 정도

O 주요내용 :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에 대한 주제가 담긴 걷기 코스 및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다양한 홍보 부스 운영

○ 소요예산 : 7,000천원(비정규센터 자체예산)

O 주 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노동인권 교육과정 운영

O 추진기간: '14. 2. ~ 12.

O 추진대상: 주민, 노조, 기업, 여성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약 320명

○ 추진내용

① 노동인권 강좌 "일행복 콘서트" : 4차[차수별 강의(2회) 및 워크숍(1회)]

• 강 의 : 일과 권리, 역사 속의 노동인권 주제 강연

• 워크숍 : 일하면서 겪었던 사례 공감, 노동인권 개선 아이디어

②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인권 리빙 라이브러리": 연 10회

• 산업단지, 각종 단체, 마을 카페 등 강의요청 기관에 인권 전문가가 찾아가는 토크 형식의 인권 강좌

O 소요예산 : 17,400천원

기대효과

O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예방은 물론 인권의식 증진으로 인해 소통과 사회통합의 기초 토대 마련

비정규직 및 영세시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거두겨리 ㅇ서시어() 존자기거두() 초기보기()	경제일자리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노사협력담당

- 추진배경

O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 차별 개선 및 비정규직 지원 사항 발굴

시업개요

- O 상시 공단 캠페인과 병행하여 설문조사 실시
- 돌봄노동자 만남을 통한 욕구 조사
 - ※ 2010년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기실시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자	계획
		○ 공단 캠페인시 설문조사 실시	소계	1,000
		- 연1회	국 비	-
	2014년	- 전1점 ○ 돌봄노동자 만남을 통한 욕구조사	시비	-
			구 비	-
		- 연2회	기타	1,000
비정규직 및		○ 공단 캠페인시 설문조사 실시- 연1회○ 돌봄노동자 만남을 통한 욕구조사- 연2회	소 계	1,000
 영세사업장			국 비	
	2015년		시비	
노동자			구 비	
실태조사			기 타	1,000
		○ 공단 캠페인시 설문조사 실시	소 계	1,000
	2016년	- 연1회	국 비	
		- 전1외 ○ 돌봄노동자 만남을 통한 욕구조사	시비	
		- 연2회	구 비	
			기타	1,000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투 자	계획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2017년	○ 공단 캠페인시 설문조사 실시- 연1회○ 돌봄노동자 만남을 통한 욕구조사- 연2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000
노동자 실태조사	2018년	○ 공단 캠페인시 설문조사 실시- 연1회○ 돌봄노동자 만남을 통한 욕구조사- 연2회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000

□ 공단 및 거점 캠페인을 통한 실태 파악

○ 일 시 : 하반기 1회

O 장 소: 달천농공단지 등 (미정)

O 주요내용 : 의제를 담은 홍보물 배부 캠페인 진행시, 노동자 의견을 취합하는

설문조사 실시

O 주 관: 비정규직 노동자지워센터

□ 돌봄노동자 이야기 마당

○ 일 자: '14. 6~7월

O 장 소 :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교육장

○ 참석대상 : 요양보호사 및 간병노동자 10~20명

O 주요내용 : 돌봄노동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욕구 조사 실시

○ 소요예산 : 1,000천원(비정규직센터 자체예산)

O 주 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기대효과

O 영세업체 근로자 및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사업 발굴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노동복지타운 조성

거두거리 이사기어() 주자리거두(() 초기보기()	경제일자리과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노사협력담당

시입내용

- O 비정규직지원센터,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클리어노사민원센터 등 산재해 있는 센터를 한 곳으로 모아 랜드마크화함
- 주민들이 비정규직 문제, 노동인권,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로 도움받고 싶을 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능 집중 후 인권 타운으로 확대

🔲 현 실 태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생이모작이음센터, 클리어노사민원센터가 각각의 기능과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북구청을 중심으로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음

길 검토시항

- O 흩어져 있는 센터들을 한군데 모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필요성은 인정됨.
- O 전체 총괄기관의 선정, 추진 방법, 적정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임

종합의견

O 전체 총괄기관의 선정, 추진 방법, 적정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거두거리 이 서시어() (주지리거두() 초기보기()	경제일자리과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노사협력담당

고 추진배경

- 2010년 북구지역 아파트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대표적인 여성 노동자라 할 수 있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 제기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돌봄노동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업개요

- O 청소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 및 지원사업
- ·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사업, 밥 캠페인, 어울림 한마당 추진
-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확보 및 지원사업
- · 돌봄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 자 계 획	
		○ 청소노동자 지원사업	소 계	8,000	
		-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시엄(3~6월)	국비	_	
	2014년	- 밥 캠페인(3~6월)	시비	_	
여성		- 어울림 한마당 추진(3월)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구비	-	
비정규직		- 돌봄노동자 심리치유사업(연2회)	기타	8,000	
노동자		○ 청소노동자 지원사업	소 계	8,000	
권리보호	2015년	-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시업(3~6월)	국 비	-	
		- 밥 캠페인(3~6월)	시비	-	
		- 어울림 한마당 추진(3월)	구 비	-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 돌봄노동자 심리치유사업(연2회)	기타	8,000	
	2016년	○ 청소노동자 지원사업	소 계	8,000	
		-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시엄(3~6월)	국 비	-	
\ \A \ \ \ \ \ \ \ \ \ \ \ \ \ \ \ \ \		- 밥 캠페인(3~6월)	시비	-	
여성		- 어울림 한마당 추진(3월)	구 비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 돌봄노동자 심리치유사업(연2회)	기타	8,000	
		○ 청소노동자 지원시업	소 계	8,000	
	<u>2</u> 2017년	-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시업(3~6월) 바 캠페이(2.4.9))	국비	-	
		- 밥 캠페인(3~6월) - 어울림 한마당 추진(3월)	시비	-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구 비	-
		- 돌봄노동자 심리치유사업(연2회)	기타	8,000
		○ 청소노동자 지원사업	소 계	8,000
	2018년	-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시업(3~6월)	국 비	-
		- 밥 캠페인(3~6월) - 어울림 한마당 추진(3월)	시 비	-
		- 이탈림 앤마당 구센(5월)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구 비	-
		- 돌봄노동자 심리치유사업(연2회)	기타	8,000

□ 청소노동자 지원사업

○ 추진시기 : 3 ~ 6월

O 대 상: 관내 청소노동자

O 주요내용

·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

• 아파트 청소노동자 밥 캠페인

- 아파트 입대위 간담회를 통해 청소노동자 식비 지원 캠페인 실시

• 청소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 청소노동자 노래자랑을 통한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

○ 소요예산 : 6,000천원(비정규직센터 자체 예산)

O 주 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지원사업

○ 일 자: 3~5월/ 8~10월

O 장 소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교육장

O 참석대상 : 요양보호사 및 간병노동자

○ 주요내용 : 감정노동과 관계노동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 실시

○ 소요예산 : 2,000천원(비정규직센터 자체 예산)

O 주 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기대효과

O 여성 비정규직 권리 보호 지원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함께 걷는 북구(사람이 우선인 보행권)

검토결과 <u>우선사업(O)</u>,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조 추진배경

-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인 보행권 패러다임으로 전환
- O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맘 놓고 횡단할 수 있는 도로 조성

█ 사업개요

- O 횡단보도 일원 경계석 낮춤 및 우수뚜껑 교체 시공
- · 기간 : 2014년 5월 ~
- · 내용 : 기존 도로상 경계석 낮춤 미시공 구간 조사 및 낮춤 시공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 2014. 5월~12월 : 횡단보도 일원 경계석 낮춤 미시공 구간 및 우수뚜껑 전수조사
- 2015. 1월~2018. 12월 : 연도별 예산확보 후 경계석 낮춤 및 우수뚜껑 교체 시공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소요예산액	50,000	20,000	20,000	10,000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2014. 5월~12월 : 현장 조사 후 연도별 시행구간 분류

🔲 문제점 및 대책

- O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 대부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중로1류(도로폭 20m)이상으로 구 단독시행 불가
- ☞ 현장 조사 후 구간별로 도로관리청(시 종합건설본부)과 협의후 시행

기대효과

O 보행자가 횡단보도로의 접근이 용의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

인권의 공원조성

거두거리 이성시어() 조라기거두(() 초기보기()	도시녹지과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〇) , 추진불가()	공원녹지담당

조 주진배경

- O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의 공원을 조성하여 인권의식 고양
- O 도시공원내 인권관련 구조물(화단), 조형물을 매년 설치하고 인권문화 제, 인권관련 전시회 등 시행

시업개요

- O 인권 공원 지정
- · 문화공연 및 주민들 이용 빈도가 높은 공원
- 공원내 인권(노동) 관련 스토리텔링, 조형물, 구조물 등 설치
- 전시회, 인권 문화제 시행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획	
			소 계	2,000	
		○ 인권공원 지정	국 비	-	
	2014년	- 접근성 및 공원이용빈도 고려	시비	-	
		- 인권공원 입간판 제작	구 비	2,000	
			기 타	-	
	2015년	○ 인권관련 조형물 설치 ○ 인권 전시회 및 문화제 장소로 이용	소 계	20,000	
 인권의			국 비		
			시 비		
공원조성			구 비	20,000	
			기타		
			소 계	20,000	
		○ 인권관련 조형물 설치	국 비		
	2016년	○ 인권 전시회 및 문화제 장소로	시 비		
		ો <u>ક</u>	구 비	20,000	
			기 타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계 획		
			소 계	20,000	
		○ 인권공원 지정	국 비	-	
	2017년	- 접근성 및 공원이용빈도 고려 - 인권공원 입간판 제작	시 비	-	
인권의 공원조성			구 비	20,000	
			기타	-	
	2018년	○ 인권관련 조형물 설치 ○ 인권 전시회 및 문화제 장소로 이용	소 계	20,000	
			국비		
			시비		
			구 비	20,000	
		· -	기타		

○ 인권공원 지정

· 대 상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 향후계획 : 인권공원 입간판 제작 및 홍보

· 소요예산 : 2,000천원 정도

기대효과

O 가족, 개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공원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생활속에서 인 권의식 증진의 소통 기회 마련

노동자 재활트레이닝센터 운영

검토결과 우선사업(), <u>중장기검토(〇)</u>, 추진불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 사업내용

○ 북구에 거주하는 산업노동자의 산재예방, 물리치료,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재활트레이닝센터 설치

🔲 현 실 태

- O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현대자동차 재활트레이닝센터 운영중임
- · 현대자동차 자체 운영(사내 2개소, 사외 1개소 운영)
- O 근로자가 산재 발생후 회사복귀 전후에 근력 강화 운동 및 재활치료 담당
- · 1일 평균 이용수 : 60 ~70명정도
- · 1일 이용시간 : 09:00 ~ 18:00
- O 인력배치: 2명
- · 현대자동차 직원인 운동처방사 2명이 교대로 재활트레이닝 훈련 및 치료

김토사항

O 현대자동차 보건팀과 협의하여 차후 북구 거주 산재노동자 이용여 부 검토 협의

종합의견

○ 오토밸리 복지센터 내 현대자동차와 재활트레이닝 센터와 이용 협약체결 등 이용방안 마련

이주노동자 의료건강권 보장

검토결과 우선사업(), 중장기검토(O), 추진불가() 보건소 진료담당

🔲 사업내용

O 양정동의 "울산이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 검토

현실 태

-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매주 일요일(14:00 ~ 16:00) 울산광역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에서 단순 질환에 대한 무료 내과진료 및 치과진료를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건소 및 의료기관(울산시티병원, 21세기병원)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진료가 힘든 울산지역 제조업체의 합법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진료서비스(진료 및 투 약, 기종 검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09년~2013년까지 보건소 무료진료건수 : 56건

그 검토시항

O 매주 일요일 울산이주민센터와 연계한 출장 진료 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동원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부족한 인력 확보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실시함

조합의견

- O 합법체류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무료 진료서비스를 보건소 및 의료기 과에서 실시하고 있음
- 불법체류 근로자의 경우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무료 진료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적극 홍보 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원 인권 워크솝 개최

검토결과 <mark>우선사업(O)</mark>, 중장기검토(), 추진불가()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지 추진배경

- O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인권증진에 관한 관심 증가
- 의원의 인권증진 교육을 통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인식전환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북구의회 의원 인권워크숍

· 대상 : 북구의회 의원

· 시기 : 연 1회

· 방법 : 의원연수와 연계한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연도별 추진 및 투자계획 (2014 ~ 2018)

(단위 : 천원)

단위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명	연도별	추진목표 및 내용	투 자	투 자 계 획	
			소 계	-	
		○ 의원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국 비	-	
	2014년		시비	-	
		- 연 1회	구 비	-	
			기타	-	
			소 계	1,000	
		○ 의원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국 비		
	2015년		시비		
		- 연 1회	구 비	1,000	
			기타		
_1,1,1,41,61	2016년	○ 의원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 연 1회	소 계	1,000	
지방의원			국 비		
인권워크숍			시비		
개최			구 비	1,000	
" '			기타		
		○ 의원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소 계	1,000	
			국 비		
	2017년		시비		
		- 연 1회	구 비	1,000	
			기타		
			소 계	1,000	
		○ 의원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국 비		
	2018년		시 비		
		- 연 1회	구 비	1,000	
			기타		

2014년도 세부 추진계획

□ 인권증진 워크숍 개최

O 일 자 : '14. 9월 중

O 장 소:미정

O 참석대상 : 북구의회 의원

○ 주요내용 : 인권의 가치 및 인권 실현의 권리와 의무 등

O 소요예산 : 비예산

- 지방의원 인권교육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
- ☞ 인권워크숍 정례화를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및 정책능력 배양

기대효과

O 인권증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권적 접근을 통한 의정활동 추진 및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촉진